선진국의 양육비 이행 제도 사례 조사

# 국외 연수(미국·캐나다) 결과 보고

2015. 8.

양 육 비 이 행 관 리 원

# - 목 차 -


Ⅰ. 출장 개요 ····· 1

1. 목적 및 세부일정 ····· 1

2. 방문기관 ····· 3

Ⅱ. 미국 사례 ····· 10

1. 연방 차원의 양육비이행제도 ····· 10

2. 뉴욕 주의 양육비이행제도 ····· 30

3. 버지니아 주의 양육비이행제도 ····· 46

Ⅲ. 캐나다(온타리오 주) 사례 ····· 55

1. 온타리오 주의 양육비이행제도 ····· 55

Ⅳ. 미국·캐나다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69

1. 제도의 특징 ····· 69

2. 제도의 시사점 ····· 72

[참고 1] 뉴욕 주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정보 ····· 76

[참고 2] 뉴욕시 가정법원 안내자료 ····· 85

# Ⅰ. 출장 개요

## 1 목적 및 세부일정

### ❑ 목적

○ 선진국 양육비이행제도 현황 및 양육비이행기관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제도 및 기구의 발전방안 모색

* **국정과제 이행** 및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 수립** 위한 선진 사례 조사

○ 양육비 이행 분야 중장기적 국가 간 교류 및 협력 도모

### ❑ 출장기간 : 2015. 7. 8.(수) ~ 7. 17.(금) (8박 10일)

### ❑ 방문국 및 방문기관 : 미국, 캐나다

○ [미국] OCSE(연방 양육비이행기관), 뉴욕 주와 버지니아 주의 DCSE(양육비이행기관) 및 가정법원

○ [캐나다] 온타리오주 FRO(양육비이행기관) 및 가정법원

※ 워싱턴DC, 뉴욕, 토론토 한인변호사협회(이하 “한인변협”) 협조

### ❑ 출장자 : 총 5명

○ 여성가족부(2명) : 윤00(한가원·양육비이행팀장, 연수단장)
이00(가족지원과 주무관)

○ 양육비이행관리원(2명) : 노00(법률지원팀장, 연구장)
이00(이행개선팀 대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1명) : 박00(연구위원)

## ❑ 출장 일정

| 일 시 | 출 장 일 정 | 비 고 |
|---|---|---|
| 7/08(수) | ㅇ 인천공항 집결 및 캐나다 출발<br>ㅇ 캐나다 한인변협 변호사 등 면담 | 인천 → 토론토 |
| 7/09(목) | ㅇ 온타리오 주 가정법원 탐방<br>ㅇ 온타리오주 FRO(양육비이행기관) 방문 | 토론토 |
| 7/10(금) | ㅇ 캐나다의 양육비이행제도 토론 및 정리 | |
| 7/11(토) | ㅇ 미국 워싱턴DC로 이동 | 토론토 → 워싱턴DC |
| 7/12(일) | ㅇ 워싱턴DC 한인변협 부회장 면담 | 워싱턴DC |
| 7/13(월) | ㅇ 연방 OCSE(양육비이행기관) 방문 | 워싱턴DC |
| 7/14(화) | ㅇ 버지니아주 청소년·가정법원 방문<br>ㅇ 버지니아 주 DCSE(양육비이행부서) 및 지역사무소 방문<br>ㅇ 뉴욕으로 이동 | 리치몬드<br><br>리치몬드 → 뉴욕 |
| 7/15(수) | ㅇ 뉴욕 주 OTDA*(임시·장애보조국) 관계자 면담 * OTDA 내 양육비이행부서 설치·운영<br>ㅇ 뉴욕시 자녀양육비 사무소 방문<br>ㅇ 뉴욕시 가정법원 방문 | 뉴욕 |
| 7/16(목) | ㅇ 뉴욕 출발 | 뉴욕 → 인천 |
| 7/17(금) | ㅇ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 |

## 2 방문기관

| 방문기관 1 | (미국) 연방 OCSE(Office of Child Support of Enforcement) |
|---|---|
| 방문목적 | ■ 미국 연방 차원의 양육비이행지원제도 현황 파악 |
| 방문일시 | ■ 2015. 7. 13. (월) 08:30 ~ 15:30 |
| 면 담 자 | ■ Yvette Riddick, Division Director<br>■ Anne Miller, Policy Program Specialist<br>■ Dvora Wilensky, Policy Program Specialist<br>■ Barbara Lacina, Division Director<br>■ Raghavan Varadachari, Acting Division Director<br>■ Dave Tabler, Management Analyst<br>■ Angela Ingram Jones<br>■ Donna Bonar, Deputy Commissioner of OCSE<br>■ Linda Deimeke, Division Director<br>■ Kim Smith, Division Director<br>■ Mona Ferrell, Regional Audit Manger<br>■ Marcia Mackall, Customer Services Program Specialist<br>■ Kim Danek, Writer/Editor |
| 기관개요 | ■ 연방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내 양육비이행 강제기관(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
| 주 소 | ■ 4th Floor Washington, DC 20447 |
| 사 진 | |

| 방문기관 2 | (미국) 뉴욕 주 OTDA(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및 뉴욕시 지역사무소(Child Support Office) |
|---|---|
| 방문목적 | ■ 뉴욕 주 및 지역사무소의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 |
| 방문일시 | ■ 2015. 7. 15. (수) 08:30 ~ 15:30 |
| 면 담 자 | ■ Samual Roberts(Commissioner, NYS OTDA)<br>■ Eileen M.Stack (Deputy Commissioner and Ⅳ-D Direct)<br>■ Francis Pardus-Abbadessa (Deputy Commissioner, NYC Human Resorce Administration)<br>■ Judi Albury (Program Specialist, HHS Region II Office of Child Support) |
| 기관개요 | ■ OTDA(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는 양육비이행기관(DCSE)이 속한 뉴욕 주 정부기관임<br>■ 뉴욕시 지역사무소(Child Support Office)는 뉴욕시 관내 양육비이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 사무소임 |
| 면담장소 | ■ 26 Federal Plaza, New York City, New York |
| 사 진 | <br>KoreaDaily<br>미주 최대 한인 미디어 정보 포털<br>THE MOST INFLUENTIAL KOREAN MEDIA IN AMERICA<br>기사입력 2015/07/16 17:16<br>[포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뉴욕 방문<br>한국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들이 15일 뉴욕을 방문해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인지원국과 뉴욕주 가정법원, 뉴욕시 인적자원국 등을 견학했다. 이날 견학은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주선으로 진행됐다.<br>[변호사협회 제공]<br>http://www.koreadaily.com<br>POWERED BY JOINS AMERICA |

| 방문기관 3 | (미국) 뉴욕시 가정법원(NYC Family Court) |
|---|---|
| 방문목적 | ■ 뉴욕시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 소송사건 현장 탐방 |
| 방문일시 | ■ 2015. 7. 15.(수) 08:30 ~ 15:30 |
| 면 담 자 | ■ X. Grace Park(Attorney, Juvinile Rights Practice) 외 3명 |
| 기관개요 | ■ 뉴욕 주 소재 가정법원으로 양육비 등 가사사건 담당 |
| 면담장소 | ■ 26 Federal Plaza, New York City, New York |
| 사 진 | |

| 방문기관 4 | (미국) 버지니아 주 DCSE(Division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및 지역사무소(Henrico District Office) |
|---|---|
| 방문목적 | ■ 버지니아 주 및 지역사무소의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 |
| 방문일시 | ■ 2015. 7. 14. (화) 08:30 ~ 15:30 |
| 면 담 자 | ■ Craig Burshem (Deputy Commissioner)<br>■ Josie Bragg (Assistant Attorney General)<br>■ Nick Murphy (Assistant Attorney General)<br>■ Shari Wilkerson (District Manager)<br>■ Beth Edwards (Senior Assistant Attorney General)<br>■ Peter Finn(SDU Manager) |
| 기관개요 | ■ 버지니아 주 정부의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내 양육비이행부서(Division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임<br>■ 버지니아 주 21개 지역사무소 중 하나인 헨리코 지역사무소 방문 |
| 주 소 | ■ 801 East Main Street Richmond, VA 23219-2901<br>■ 1610 Forest Avenue, Suite 200 Richmond, VA 23229 |
| 사 진 | |

| 방문기관 5 | (미국) 버지니아 주 청소년·가정법원(Henrico 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District Court) |
|---|---|
| 방문목적 | ■ 버지니아 주 법원의 양육비 관련 청문 현장 탐방 |
| 방문일시 | ■ 2015. 7. 14. (화) 08:30 ~ 15:30 |
| 면 담 자 | ■ Jacob P. Wilkins(Clerk of Court) 외 3명 |
| 기관개요 | ■ 버지니아 주 헨리코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지역 법원임 |
| 주 소 | ■ 4201 East Paham Road Henrico, Virginia 23228 |
| 사 진 | |

| 방문기관 6 | (캐나다) 온타리오 주 FRO(Family Responsibility Office) |
|---|---|
| 방문목적 | ■ 온타리오 주의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및 서비스 현황 파악 |
| 방문일시 | ■ 2015. 7. 9. (목) 08:30 ~ 15:30 |
| 면 담 자 | ■ Jeff(FRO 책임자)<br>■ 낸시 하든(고객서비스 부서 관리자)<br>■ 에린 오코너(비니지스 프로그램 관리자)<br>■ 신라 다크(지원부서)<br>■ 베네사(회계부서 책임자 대리)<br>■ 크리스틴 리치(지원부서)<br>■ 리처드(지원부서 책임자)<br>■ 베네딧(주간 사건 담당자) 등 |
| 기관개요 | ■ FRO는 온타리오 주 정부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내 설치된 양육비이행기관임 |
| 주 소 | ■ 1201 Wilson Ave, Building ‘B’ , Downsview ON M3M 3A3 |
| 사 진 | |

| 방문기관 7 | (캐나다) 온타리오 주 가정법원(Family Court) |
|---|---|
| 방문목적 | ■ 온타리오 주 법원의 양육비 관련 청문 현장 탐방 |
| 방문일시 | ■ 2015. 7. 9. (목) 08:30 ~ 15:30 |
| 면 담 자 | ■ Shane Foulds, Counsel,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
| 기관개요 | ■ 온타리오 주 소재 가정법원으로 양육비 등 가사사건 담당 |
| 면담장소 | ■ 1201 Wilson Ave, Building ‘B’ , Downsview ON M3M 3A3 |
| 사 진 | <br> |

# Ⅱ. 미국 사례

## 1 연방 차원의 양육비이행제도

### 1 제도 개요

#### (1) 제도 현황

1) 제도의 발전

○ 1975년 제정된 연방 사회보장법 IV-D에 따라 연방 양육비이행기관인 OCSE가 설립되어, 연방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강제제도 시행

○ 지난 40년 간 제도의 발전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보임

| 구 분 | 1977년 | 2014년 |
|---|---|---|
| 서비스 아동 수 | 3백만명<br>(이혼가정 자녀가 대다수) | 1천6백만명<br>(미혼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이 많아짐) |
| 서비스 내용 | 부모 위치 찾아주기<br>친부 확인<br>양육비 지급 의무 부과<br>양육비 징수<br>(핵심 기능 위주) | 핵심기능 + 양육비 불이행 예방,<br>가정폭력 방지 공동 협력,<br>건강보험보장, 건강가정 관계 형성,<br>경제적 안정, 친부와의 관계 형성<br>(가족 중심 전략) |
| 지역 수 | 54개 주와 territories | 54개 주·준주 + 60개 부족 + 25개 국가와 캐나다의 각 주 |
| 이행률<br>(Current Support Collected) | 1977년은 30%대로 추정<br>* 2000년 54% | 64% |
| 비용 대비 효과 | 1달러 비용으로 3.25달러 징수 | 1달러 비용으로 5.25달러 징수 |
| 징수 실적 | 현금, 수표, 우편환으로 10억달러 징수<br>(서류에 기초한 수작업 처리) | 신용카드와 전자식 자금이동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80억달러 징수<br>(빠르고 믿을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 |

2) 가족 중심 전략(Family-centered Strate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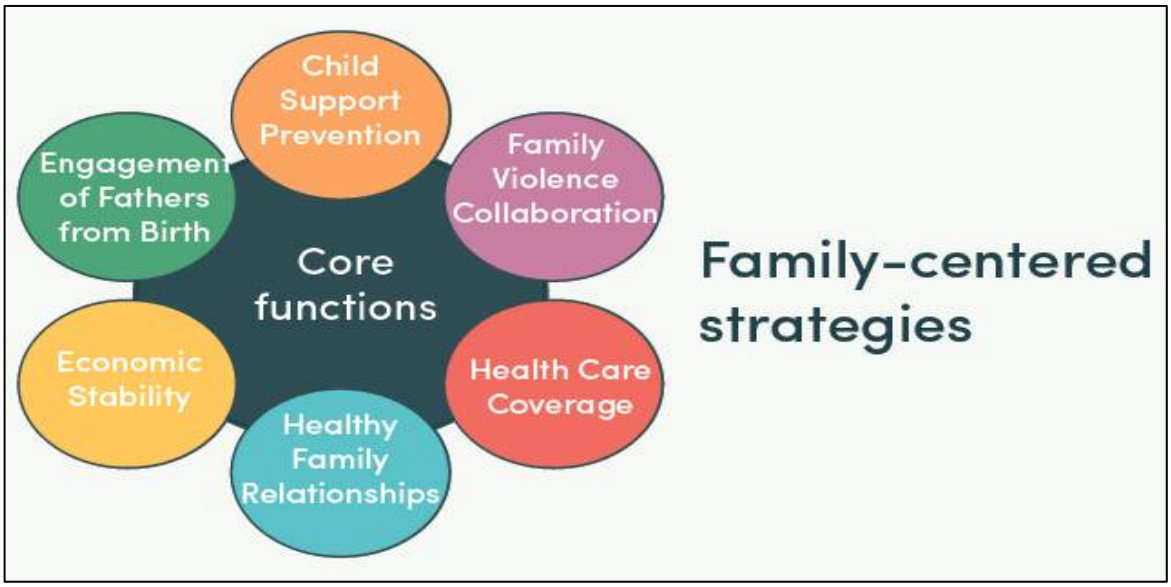


○ 양육비 이행을 통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가정폭력 방지 등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예방 차원의 가족 중심 전략 관점에서 업무 수행

○ 특히, 양육비와 부모면접권(Parenting Time Orders)과의 관계에 주목
-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유대를 가진 비양육부가 양육비를 더 잘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부가 자녀의 생활에 더 많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접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향상된 자녀양육비 지급 성과와 연관되어 있음. 예를 들어, 주의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 사이의 몇 몇 연구 결과는 부모면접권이 더해질 경우 자녀 양육비 지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줌

○ 양육비 이행은 가정폭력 방지와도 연관됨
- 현재 또는 과거의 폭력적인 파트너를 가진 여성의 90% 이상이 자신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자녀양육비 받기를 원함
- 바른 부성 갖기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가정폭력 위기에 몰린 가정들을 성공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 역시 자녀 양육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끌 수 있음.

## 2) 제도 주요내용

### 1) 법

○ 연방 Ⅳ-D법(Social Security Act, Title Ⅳ, Part D)이 있으며, 연방법 체계 안에서 각 주의 주법으로 관장하고 있음

### 2) 미션

○ 부모의 위치를 찾아주고 부권(자녀인지)과 양육비 명령을 받아내며, 지급을 강제하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늘리도록 함

○ 국가 내 1천7백만 아동의 4명 중 1명이 서비스를 받도록 함

### 3) 조직 : 연방, 주, 부족 및 지역 협력

○ 연방 OCSE(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 Social Security Act의 Ⅳ-D 규정에 근거하여 1975년에 설립됨
- 전체적인 양육비 이행 계획을 총괄·조정·실행하는 등 각 주의 양육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

* 본부는 Washington DC에 위치하며 주에 10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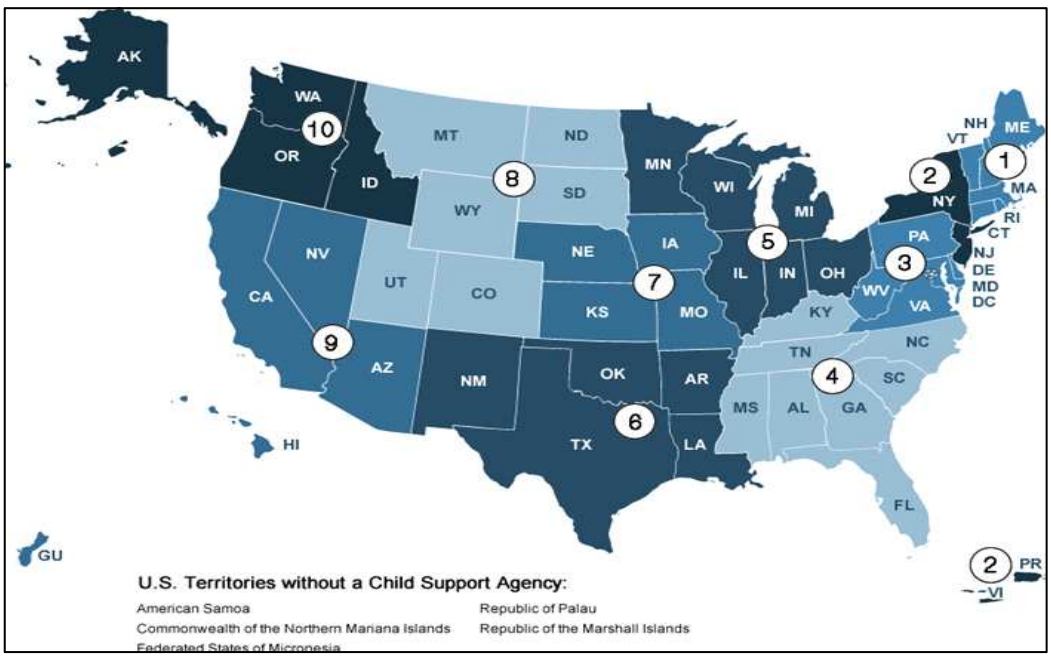

○ 주 양육비이행기관 : 50개 주, 3개 준주(Territories), 워싱턴 DC에서 각 주의 양육비 이행 업무 수행

4) 인력 및 총 사건 수

○ 정규직 직원(full-time staff) : 54,569명

○ 총 사건 수 : 총 1천 6백만 건*

* 현재 복지수혜자 11.2%, 과거 복지수혜자 42.5%, 복지수혜 없는 경우 46.3%

5) 예산

○ 연방(66% + 인센티브 - 패널티) - 주(34%) 매칭 펀드로 운영

6) 2014년 통계

○ 공적 양육비 프로그램 총 사건 수(아동 기준) : 1천 6백만건

○ Ⅳ-D 사건 양육비 징수액 : 282억 달러

○ 재정지출 : 57억 달러

○ 비용 대비 효율성 : 1달러 비용을 들여 5.25 달러 징수

○ 친부권 확립 95.8%, 양육비 결정 85%, 현재 양육비 기한 내 징수 64%, 연체금 사건 63%

7) 서비스 수요자

○ 공적 양육비 프로그램과 사적 양육비

-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60%가 공적 양육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Family court를 통해 개인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거나 받지 않음
- 주(州)마다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서비스 신청 가능

## (3)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① 부모 정보 제공 서비스

○ 주 내 정보 제공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에 대한 정보 제공
- 부모의 집 주소, 소득, 재정적 자산, 재산, 의료보험정보, 고용정보를 제공

○ 주와 연방 간 정보 제공
- 주 : 공동시설, 교정시설에 있는 부모 정보 제공 서비스
- 연방 : 연방 차원의 부모 정보제공 서비스

○ 국가 간 정보 제공
- 연방에서 비양육부・모가 어느 주에 거주하는지만 정보 제공

② 친부 확인 서비스

○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려면 먼저 친부 확인을 해야 함

○ 친부확인은 법적으로 친부임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법원 명령 또는 행정 명령을 받아야 함

③ 양육비 결정 서비스

○ 양육비의 결정
- 사법 또는 행정에 관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주의 소득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함
- 현재 통용되는 양육비
- 건강보험이나 현금 의료 지원
- 주의 지원(복지급여)에 대한 상환

- 양육권 가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연체금
- 어떤 주는 시간육아(자녀면접)을 포함함

❍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아래의 연방 가이드라인의 필수요건 범위에서 각 주가 정함
  - 최소한의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수입을 고려할 것
  - 숫자로 나타낸 수학적 계산식이어야 함
  - 자녀의 건강과 욕구를 고려해야 함
  - 반박할 수 있는 추정치를 보여주는 것임
- 가이드라인은 주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다양함

<양육비가이드라인 자동계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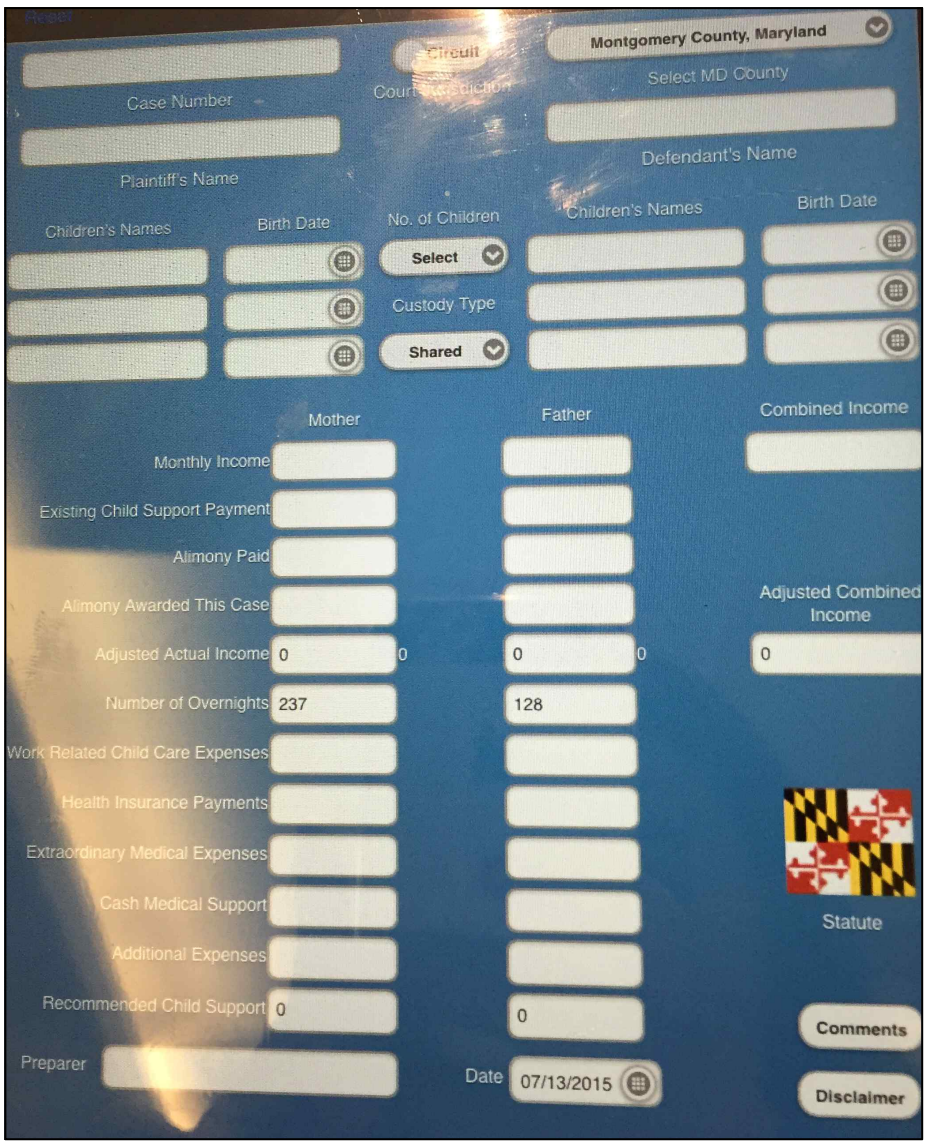

○ 양육비 결정의 변경

- 양육비 지급 금액은 36개월마다 자동으로, 어느 일방의 요구로, 또는 (대개 TANF 사건들에 있어서) Ⅳ-D 기관에 의해 재평가됨

④ 양육비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

○ 연방 차원의 제재조치 : 여권 제한, 연방세금환급금에서 차감(벌충), 행정적 차감(벌충), 보험 대조, 여러 주 걸친 금융기관 데이터 대조

○ 주 차원의 선택적 제재조치(주마다 차이) : 주 세금환급금에서 차감, 복권/카지노 당첨금 가로채기, 유치권/채권압류/추가부담금, 재산몰수, 운전면허증이나 레크레이션 면허, 차량 등록 등의 제한 또는 철회, 형사소추를 위하여 연방 검사에게 위탁

⑤ 의료지원 서비스

○ 친부모 또는 양부모에게 주어진 보장 혜택,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나 자녀건강보험프로그램 등 연방의료보험 프로그램, 주 의료보험 교환 프로그램, 현금 의료지원 등을 통해 자녀의 의료보장 혜택을 늘려줌

2) 프로그램 신청 및 홍보

① 신청 방법

○ 주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또는 서비스 기관에 신청서 제출

○ 적정 수수료(대개 25 달러) 지불

② 각 주의 웹사이트 운영 현황

○ 주 웹사이트는 고객(부모나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쉽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음

○ 통상적인 웹사이트 링크 페이지는 Forms and publications, Contact information, Payment information, Hospital/paternity information, Family violence information, Policy guidance 로 구성되어져 있음

<관련 주요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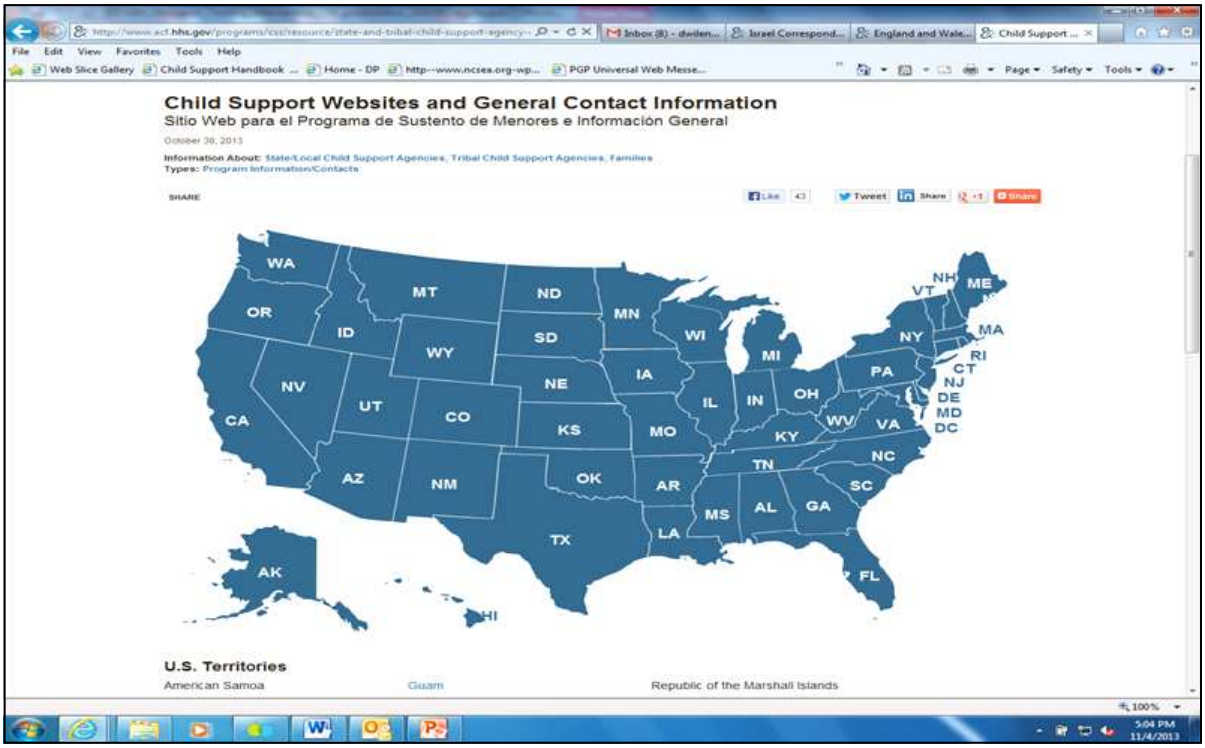


· OCSE website(위 그림): http://www.acf.hhs.gov/programs/css
· National Child Support Enforcement Association (NCSEA): http://www.ncsea.org/
· Eastern Regional Interstate Child Support Association (ERICSA): http://www.ericsa.org/
· Western Interstate Child Support Enforcement Council (WICSEC): http://www.wicsec.org/
·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text&cid=131

3) 국제협력

❍ OCSE : 미국의 중앙 관할기관

❍ 26개 상호협정 국가 : 호주, 체코, 엘살바도르,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과 북아일랜드, 캐나다의 12개 주와 준주

❍ 자녀 양육비와 다른 가족의 양육비를 국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2007년 헤이그조약

❍ 주를 위한 Family Support Act 표준

## 2 연방 OCSE의 주요 업무

### (1) 조직 현황

1) OCSE

○ 연방 정부의 아동·가족관련 기관 내 OCSE 설치·운영
-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 본부 및 10개 지소(주요 주에 설치)로 구성

2) 주요 부서

○ 고객 커뮤니케이션 부서 : 홍보,
- 고객 서비스부 : 상담/ 민원 처리

○ 주·부족 시스템 부서 : 주·준주를 지원, 관리·감독

○ 실적·통계 분석 부서 : 연방 차원의 실적·통계 관리

○ 연방 시스템 부서 : 연방·주 양육비 프로그램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

○ 평가 부서 : 성과 평가 및 회계 감사

○ 프로그램 개선 부서 : 계획, 기획부서

### (2) 부서별 업무

1) 고객커뮤니케이션부서(Div. of customer communications)

① 고객서비스부(Customer Service Branch)

○ 인원 : 직원 5명

○ 업무 : 질문 응대 업무
- 질문자 : 고객(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배우자, 조부모와 자녀),

백악관(대통령, 부통령, 퍼스트레이디), 국회의원, 감찰관실(감사원), 특별한 관심 집단, 일반 공중으로부터 오는 질문에 응대

- 질문 방법 :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 질문 처리 절차 : OCSE의 자동화된 질문관리시스템
- 질문의 세부사항 처리 관련 : 지방, 주, 지역 사무소를 통하여 질문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직접 처리

*** 가장 관심이 큰 3가지 질문**

· 정부 간/주 간 : 두 주 이상에 걸쳐 있는 자녀 양육비 사건들
· 이행강제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행강제조치를 원하는 양육부·모
· 자녀 면접·교섭권 :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비양육부·모

- 기타 : 가족 중심 지원 서비스
  - 고객들이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 밖에 있는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들을 연결해주고 소개해 줌
  - 지원 서비스 : 사회 서비스(쉼터와 음식), 양육권, 자녀 면접·교섭권, 가정폭력과 자녀복지, 아버지 되기(부성) 프로그램, 고용프로그램 등

② 고객커뮤니케이션부서(Div. of customer communications)

❍ OCSE 커뮤니케이션 대상

- 주요 청중 : 주, 지역 및 부족 수준 자녀 양육비 관리자 및 직원
- 부수적인 청중 : 가족, 지역공동체 서비스 기구, 입법자
- 주요 도구 : 전자우편, 인터넷, SNS, 네트워킹, (학술)회의

❍ OCSE 정보 제공 방법

- OCSE 웹페이지 : 연방 정보의 주요 원천
- 매달 출간되는 주요 도구 : 고객의 소리 블로그, 자녀 양육비 보고서
-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 형태의 사례집
  - 키 구성요소 : 비주얼, 내용, 지식
  - 효과 :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단순하고 창조적인 방법, 사람들이 메시지나 스토리를 이해하게 도움
- 소셜 미디어
  - 트위터 : 구체적인 메시지들

・웹사이트를 안내하는 짧은 트윗 : 다른 소셜미디어로 확산

- Linkedin

・효과 : 일선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사, 주와 종종의 관리자, 자녀 양육비 협회들에게 도달, 핫토픽에 대한 인지도 확산, 현장의 관심분야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

2) 주·부족시스템부서(Div. of State and Tribal Systems)

❍ 인력

- 팀장, 54개 주·준주를 지원하는 6명의 분석관, 보조인력

❍ 업무

- 각 주에서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 운영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계획, 설계, 개발 및 실행을 승인
- 법과 규정, (시스템을 위한 연방 펀딩 요구 장치인) 발전계획에 따라 각 주에서 시스템을 하는 것을 감시 및 보증
- 주와 부족의 자동화된 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연방의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 분석 및 승인
- 정부 모든 레벨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시설·서비스 상호 이용과 공동 작업을 조성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연방, 주, 지역과 부족의 건강·휴먼서비스기관들과 협력

❍ 주 시스템

- 현재 50개 주와 4개 준주의 시스템을 모니터하고 있음
- 54개 주·준주 중 53개는 연방에서 보증하는 각 주를 망라하는 시스템을 갖춤

❍ 부족 시스템

- 직원 : 연방 프로젝트 관리자 1, 개발자 3, 시스템 관리자 1,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 기술/테스트 전문가 1
- 상을 받은 인디언과 원아메리카인을 위한 양육비 이행강제 시스템
- 현재 7개 부족은 운영 중, 나머지 3개 부족은 도입 예정

3) 실적·통계분석부서(Div. of Performance and Statistical Analysis Systems)

❍ 전체적으로 분류된 징수(Total Distributed Collections)

❍ National Distributed Ⅳ-D Collections

❍ 전체 집행 지출(Total Administrative Expenditures)

❍ 연방의 성과 측정기준 (Federal Performance Measures)

- 친부 확인률(Paternity Establishment Percentage, PEP)
- 양육비 결정 징수액(Support Order Collections)
- 현재 양육비 징수액(Current Support Collections)
- 연체사건의 비율(Percentage of Arrears Cases)
- 비용의 효율성(Cost Effectiveness Ratio)

4) 연방시스템부서(Div. of Federal Systems)

❍ 업무

- 연방시스템 : 일련의 데이터 공유·징수 및 이행강제 시스템과 자녀양육비 프로그램의 핵심 미션을 지지하고 연방·주의 복지프로그램에 있어 부적합한 지출을 막도록 돕는 전자통신망
- 서비스 : 다음을 위해 정보·전자통신 사회기반시설을 제공

- 부모 정보 제공
- 타당하고 공정한 자녀 양육비 의무 부과
- 수입 원천징수 명령과 지급 처리
- 기일이 지난 자녀 양육비 징수 및 이행 강제
- 서로 그리고 파트너 상호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 허위임을 확인하고 정부 프로그램에 있어 초과지급을 막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공인된 기관에 제공

❍ 주요 서비스

- 연방 부모 정보 제공 서비스
  - 국가신규채용명부등록소(NDNH) : 국가적인 고용, 임금, 실업 신청 및 급여정보 등록소, 2014년에 6천만명의 신규채용근로자 신규 등록, 6억 1천 4백만건의 임금 기록, 2천 9백만건의 실업 신청 또는 급여 기록 (2014년 7억 4백만 달러의 자녀 양육비를 징수하는데 기여)
  - 연방양육비사건등록소(FCR) : 2천만건의 사건 기록 보유 범국가적 자녀 양육비 사건 등록소
  - 외국에 있는 부모 찾기

**〈사전적 대조〉**

- 국가신규채용명부등록소(NDNH)를 연방양육비사건등록소(FCR) 자료와 대조 : 고용정보를 갱신할 때 자녀 양육비 사건 구성원의 고용정보와 대조
- 연방양육비사건등록소(FCR)를 국가신규채용명부등록소(NDNH)와 대조 : 자녀 양육비 사건자료를 갱신할 때 자녀 양육비 사건 구성원 정보를 고용정보와 대조
- 연방양육비사건등록소(FCR) 자료를 연방양육비사건등록소(FCR) 자료와 대조 : 한 주의 자녀 양육비 사건 구성원이 다른 주 양육비 사건의 한 구성원이기도 할 때 주들에게 이를 알려 줌
- 연방양육비사건등록소(FCR) 자료를 사회보장국(SSA) 자료*와 대조 : 자녀 양육비 사건자료를 갱신할 때 자녀 양육비 사건 구성원 정보를 사회보장국 신청서, 위치, 복지급여, 사망 및 수감자 정보와 대조

*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stration) 자료
- 프로그램에 기초한 수입 : 퇴직 및 장애 지급금이 양육비지급 또는 양

육비 명령 실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2014년 사회보장국 채권압류 징수액 10억 달러 초과)

- 프로그램에 기초한 니즈 : 자녀 양육비가 사건 조치를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도움
- 연봉 기록을 연봉(자영업 소득 포함)으로 봄
- 사망정보
- 5천4백 개의 연방·주·지역 시설에 제공된 수감자 정보

**〈배치파일로 신청 또는 자녀 양육비 포털로 위치 찾기〉**

• 국방부(현역 군 종사자 정보), 재향군인관리국(수혜자 정보), 국세청(주소 정보), FBI와 국가안전국(고용정보), 국가신규채용명부등록소 문의(고용, 임금 및 실업 정보), 연방양육비사건등록소(개인별 자녀 양육비 사건 전체 정보), 고용자 문의(포털로만 가능, 근로자의 성명 또는 연방 식별자에 기초한 근로자 정보), 국방부 재정지원혜택(포털로만 가능, 공정한 자녀 양육비 산정 명령 위한 군 종사자의 수입과 재정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

**〈다른 위치 찾기 대조〉**

• National Change of Address(NCOA) 대조 : 누군가 이사 갈 때 새 주소 제공
• Defense Manpower Data Center(NCOA) 대조 : 군인보험 보장 자격을 가진 자녀 확인(약 45만건 대조)

- 연방 징수 및 이행강제 정보 제공 서비스

• 각 주에 제출된 양육비 채무자 명단 데이터베이스
• 여러 주에 걸친 금융기관 자료 대조(MSFIDM), 보험 대조(IM), 연방 세금 환급금 및 행정적 지급금 차감, 여권 거부, 채무 조사에 활용
• 7백9십만 개의 기록을 포함

**〈여러 주에 걸친 금융기관 자료와 대조〉**

• 금융차산을 찾기 위해 은행과 투자회사에 분기마다 대조

**〈보험 대조〉**

• 총 지급금 확인을 위해 생명보험업자와 근로보상보험업자에 날마다 대조
• FY 2014년에 보고된 징수액 1.1백만달러

**〈연방 세금 환급금 차감〉**

• 세금 환급 전에 채무자 파일을 국가세입서비스기록과 대조
• 2014년에 19억 달러 징수

**〈연방 행정적 지급금 차감〉**

• (농장에 대한 지급금처럼) 연방지급금 차감

〈여권 거부〉
- 주의 부서에서 채무자 파일로 여권 신청 또는 갱신 대조
- 2014년 보고된 징수액 2천7백만 달러(미주리주 4십2만 달러, 캘리포니아주 해외에서 일하는 전문운동선수로부터 4십만7천 달러, 워싱턴 업무출장 관련 3십6만5천 달러 등)

〈채무 문의〉
- 사용자와 보험업자가 지급금이나 보너스를 지불하기 전에 양육비 채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자녀 양육비 포털 서비스
  - 연방 시스템에 접속하는 안전한 인터넷 관문, 실시간 정보 접근
  - 저비용으로 데이터와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
  - 포털 기능 : QUICK(다른 주의 사건 정보 열람), 연방 차감 및 여권 거부, 부모 위치 찾기, 고용자 정보, 부채조사, 전자문서 교환, 연방 양육비사건등록소 문의 등

〈연방, 주 간 정보 교환 : 자녀 양육비 사건 활동〉
- CSENet : 각 주들이 전자적으로 통신하며 사건절차를 개시하고 주-주 간 찾기를 행함. 연간 9백만건의 사건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음
- QUICK : 한 주에서 다른 주의 사건들에 대한 사건 활동과 재정 정보 확인
- EDE : 각 주들이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으며, 출생기록이나 법원 명령과 같은 사건 신속 처리 가능
- 주 간 걸쳐 있는 사건 처리 위해 주들 사이에 매년 대조가 이루어짐

〈e-IWO : 주와 고용주(사용자) 간〉
- 각 주와 고용주들이 수입원천징수 명령, 종료 및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전자적 통신 도구임
- FY 2014년에 8천2백만 달러 징수 증가
- 주 예상 행정비용 절감 연간 1.1백만달러

〈다른 기관의 정보 활용 : 연방과 주의 조사 자료 대조〉
- 공공기관들이 거짓 탐지, 과지급금 방지 및 연방채무 반환받기 위해 FPLS(연방부모찾기서비스) 대조 : TANF, 주 영양보조프로그램(State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주 근로자기관들, 금융관리기관들, 주거와 도시개발, 국세청, 사회보장기관
- 기관 자급력 제고 및 연방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위해 FPLS(연방부모찾기서비스) 대조 : 어린 부모들, 출산모의 가정 방문권(Home-visitation for new mothers), 녹색일자리와 의료서비스, 노동력 개혁 등에 활용

- 고객과 시스템 지원
  - 교육훈련, 아웃리치 및 지원팀 : 기술지원, 사용자 서비스, 주 기술 지원, 최종수혜자 지원
  - 시스템 팀 :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개선
  - 지속적인 향상(분석, 혜택 대비 비용, 실행가능성), 보안 업무 등

5) 평가(회계감사)부서(Office of Audit)

○ 조직
- 1978년 Audit Division 설립
- OCSE 내 독립적인 평가(회계감사) 그룹임
- 1996년 Personal Res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제정 이후 이름(Office of Audit) 뿐만 아니라 역할도 변화됨

○ 임무
- 각 주의 프로그램 성과와 재정 운용에 대해 회계 감사, 평가하여 각 주에서 자녀양육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
- 이를 통해 각 주들이 프로그램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 부모들과 자녀들을 돕도록 함

○ 평가의 종류
- 자료(데이터)의 신뢰성 검사
  - 자료 신뢰성의 개념 및 평가의 목표 : 자동화된 시스템과 그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함임
  -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 각 주들이 자료신뢰성검사를 통과하게 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자격 인정 / 정확하고 향상된 데이터는 자동화 수준을 높임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고객 불만을 줄이고 고객 만족을 높임
  - 신뢰성 감사를 위한 5개 실행 지표 : 친부권(자녀인지) 확인, 양육비 결정 사건, 현재 양육비 징수, 연체된 양육비 징수, 비용 대비 효과
- 행정비용/제한된 비용 검사
- 특별과제/평가

7) 프로그램개혁부서(Div. of Program Innovation)

❍ 임무

- 양육비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위해 새로운 전략을 발전, 평가, 개선
- 유망하고 증명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에 관한 정보 전파
- 국가자녀양육비전략계획 마련

❍ 업무 계획

- 믿을 수 있는 양육비 지급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증명, 평가
- 지역적 또는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는 프로젝트
- 아웃리치와 교육
- 현재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이내의 현대화된 접근
- 전략 계획
- 연방 기관들과 주, 부족, 지역 및 공동체 기관들과의 협력

❍ 전략적 파트너쉽

- 퇴역군인협회, 법무부와 교정국, 홈리스협회, 노동부, 가족지원국, 주거 및 도시개발, 영양지원, 의료지원센터 등
- 수감된 부모들, 군종사자·퇴역자 및 가족,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ies Act, 아버지 역할, 홈리스 근절, 건물자산, 고용과 경제 안정, 가정폭력 방지 등 상호 협력

❍ 가족 중심 서비스

- 부모의 거의 70%가 지급, 다른 30%는 다양한 장벽에 대면
- 중요한 특징은 “주고 싶지 않음”과 “줄 수 없음”에 있음
- 연구는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의 능력을 키우는 접근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이 최선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는 노력을 지속
- 프로그램 개선에 있어 OCSE 내에서 정책과 실행, 시스템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갈수 있도록 협력 추진

## 3 연방 OCSE 방문 활동

### (1) OCSE(주요 질의·답변)

1) 타 기관 보유 정보를 제공 받아 활용하려면, 해당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

○ OCSE에서 보유한 양육비 채권자, 채무자 등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OCSE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상대기관 정보를 받아보는 형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정보의 입수가 제한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어떠한지?

○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는 법이 매우 강력하나, 양육비 이행업무의 경우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

3)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한 양육비이행제도가 발전된 주를 소개한다면?

○ 텍사스 주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 항목 개설·운영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양육비 관련 앱 활용하고 있으며, 오리건 주의 경우 검찰청 산하기관으로서 강력한 이행 강제를 실현하고 있음

3) 양육비이행기관을 가진 주요 국가와의 협력 방안

○ 현재 26개 국가 및 캐나다 각 주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가입한 협회가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위 협회에 가입한다면 제도발전과 구체적인 협력에 도움이 될 것임

○ 미국의 경우 한국에 근무하는 주한미군의 자녀 양육비 징수와 관련하여, 미국의 양육비이행지원기관과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 (2) 기타 활동 : 워싱턴DC 한인변협 부회장(최선이변호사) 면담 내용

### 1) 메릴랜드 주 자녀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관련

○ 양육비 가이드라인 개요

- 현재 미국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양육비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

* 초기 미국에서도,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판사의 권한 침해라고 하여 판사들이 싫어했지만, ① 사건이 폭주하고, ② 이 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근거가 없는 문제점 발생하여 이 기준을 수용하게 된 것임

- 자녀 수, 양육분담 정도, 수입, 주 고유번호를 넣으면 양육비가 자동 계산되는 프로그램이 있음

○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산정기준

- 양육비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료, 월급과 보육(Child Care) 비용 등 일반적인 산정기준과 그 외 치열교정, 치과진료, 천식치료, 정신과 상담 등 특별한 의료비(MEDICAL ISSUE)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산정 가능(메릴랜드 주 가정법 §12-201)
- 또한, 부모가 양육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고려 가능

* 부 또는 모 한쪽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기간이 1년의 35%인 127일인 경우를 의미

-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득・지출 등 재정 진술서를 제출이 필요
- 또한, 부모 중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자발적 빈곤*"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건강상태, 교육 정도, 직업 경력 등 취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

### 2) 미국 양육비이행제도 관련

○ 미국 양육비이행제도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부모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정부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임

○ 양육비 불이행 시에는,

- 양육비 체납부모의 경우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 직접지급명령”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 (수입 직접지급명령은 월급 중 20% 또는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양육비로 지급됨)
- 또한, 양육비이행지원기관 소속 변호사(검사)가 법원에 이행명령 등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불이행 시 법정모독죄를 적용하여 감치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양육비 불이행뿐만 아니라 DNA 검사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판사는 채무자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여 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하도록 함

○ 결국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시작이고, 이를 받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함

- 양육비이행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 부서하고 협력이 중요
- 미국도 초기에는 양육비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다른 연관 부서와의 협력이 쉽지 않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재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공감하여 협조하게 됨
- 자녀양육비는 아이의 혜택이니까 양육부·모가 받기 싫어도 거절할 수 없고, 특히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양육비 이행을 하도록 신청하여야 함

## 2 뉴욕 주의 양육비이행제도

### 1 제도 개요

#### (1) 일반 현황

1) 주요 현황

○ 뉴욕 주의 양육비 건수 및 복지지원 여부

| 구 분 | 건수 | 현재 지원 | 과거 지원 | 지원 없음 |
|---|---|---|---|---|
| 뉴욕 주 | 929,063 | 16% | 41% | 44% |
| 뉴욕시 | 386,722 | 14% | 44% | 42% |
| 주의 나머지 지구 | 542,341 | 17% | 38% | 45% |

2) 법적 근거

○ 1975년 제정 연방 사회보장법 IV-D에 따라 시행

3) 조직 및 업무

○ 뉴욕 주정부의 복지서비스기관 내 양육비이행부서 설치·운영

- 뉴욕 주 OTDA(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 CCWB (Center FOR CHILD WELL-BEING) ⇒ DCSE(Division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 CCWB의 강령

- 가족문화 강화 및 자녀에 대한 책임 인식을 통한 복지비용 절감 도모
  - 양육비 이행강제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지원 양육부모의 자립 지원 및 지원 없는 가족의 장래 복지지원 의존 방지
  -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통한 자녀의 재정적· 정서적 욕구 충족 지원

❍ CCWB의 주요 업무

**- 자녀양육비 이행강제 프로그램 : DCSE에서 관장**

• 주(DCSE)는 관리·감독, 58개 구역(County 단위)에서 집행하는 구조

* 참고 : 버지니아 주는 주에서 관리・감독・집행 기능 모두 수행

• DCSE의 주요 업무 : 자녀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ASSETS/CSMS), 58개 지부의 운영능력 분석·평가(핵심 능력 평가 도구 활용), 지부에 대한 기술적 프로그램 지원, 지부 운영 관리·감독, 가족 중심 자녀 지원 서비스 제공, 법령 입안, 예산 확보·관리, 교육 등

- 자녀 면접 및 교섭 프로그램(Access and Visitation Program)

• 7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및 집행 지원(Plattsburgh, Buffalo, Rochester, Poughkeepsie, Long Island, New York City 에서 진행)

• 1998년 이후 20,591 가족 및 21,847명의 아동에게 제공

❍ DCSE의 주요 업무

- 양육비 집행(Child Support Administration)

• 규정, 정책, 절차의 제공

• 주 컴퓨터시스템(ASSETS(Automated state support Enforcement and Tracking system)/CSMS(Child Support Management System)) 운영

* 과거 카운티 단위로 자금 등을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주에서 통합 관리

• State Disbursement Unit(양육비 지급 처리 업무 수행) 운영

• 지구 단위 업무 감사, 기술적 지원

• 프로그램 재정 집행

• Childsupport.ny.gov 웹사이트 운영

• 행정상 이행강제(수입 압류, 세금환급액 차감, 여권 거부 등)

• 사법적 결정/이행강제(Judicial Establishment/Enformcement)

• 친부권 및 양육비 결정 청구(original petitions for paternity and support), 변경 청구, 결정 위반

4) 인력

○ 뉴욕 주 DCSE는 60명 근무, 뉴욕시에는 800명 근무

○ 담당 직원 : 구역별 사건 수에 따라 직원 수가 다양함
- 뉴욕시 : 387천건을 740명 이상 직원이 담당
- Hamilton시 : 148개 사건을 1명의 직원이 담당

5) 예산

○ 자녀 양육비 이행강제 프로그램(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 운영비 : 66%는 연방 OCSE 지원, 나머지 33%에 해당하는 운영비 중 21%는 주 정부, 79%는 지방정부 부담
  * 연방 정부 인센티브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공유
- 양육비 징수금 :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균등 배분
  • 한 자녀 양육 지원 시 : 월 징수금의 100 달러까지는 신청인에게 전달(복지지원 자격 결정 위한 소득산정 계산에서 제외)
  • 두 자녀 이상 : 월 200 달러씩 신청인에게 전달(소득산정 계산 제외)
  * 복지지원 금액 초과하는 징수금은 가족에게 지급하며,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의 경우 징수금 전부를 가족에게 직접 전달

○ 면접 및 교섭 프로그램(Access and Visitation Program)
- 7개의 면접 및 교섭 프로그램은 100% 연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
- 이외에 현금 혹은 비금전적인 기부금 활용

6) 주요 통계(2014년)

○ 친부권 확립(91.2%), 양육비 결정(82.1%), 현재 양육비 징수(65.7%), 연체금 징수(56.7%), 업무 효율성(1달러 비용 → 5.1 달러 징수)

○ 수입 압류(징수액의 72%), 양육비 지급(17억 달러, 1억 건), 전자지출(전체의 87%), 고용 창출(3백만건), 상담전화(130만 건), 음성응답시스템 전화(320만 건), 공지(8백만 건 인쇄·발송), 자료수집(180만 건의 서류)

### (2) 자녀 양육비 이행강제 프로그램

1)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의 위치 조사

2) 친자 확인

3) 비양육부모의 재산 조사

- ❍ 지구 CSEU(Child Support Enforcement Unit)의 ASSETS/CSMS를 통한 State Wage Reporting System(주 임금 보고 시스템) 검색 지원
- ❍ 지구 CSEU의 State income tax return files(주 소득세 반환 파일), the State and National Directories of New Hires(주 및 연방의 채용 정보), FIDM(주 정부의 금융 자산 검색 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금융 자산 정보 확인 지원

4) 인지청구 지원

5) 양육비 이행강제 지원

6) 양육비 결정 변경 지원

7) 징수 지원

- ❍ 모든 자녀 양육비 지급은 각 지급 날짜, 지급 금액 및 지급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Albany의 중앙 집중화된 지급 과정을 통하여 해당 수취인에게 지급
- ❍ 모든 거래 내역은 자동적으로 ASSETS/CSMS에 의하여 계좌 내역 및 미지급 경우의 다음 단계 진행 과정 관리

8) 법률 서비스

9) 법원을 거친 이행강제 서비스(면허의 정지, 이행명령, 수감 등)

### (3) 행정적 이행강제

1) 수입 직접지급(Income Execution)

○ 집행 요건 : 법원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거나 TANF 사건이 아닌 당사자가 서면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1990. 11. 1일 이후 제기된 양육비 결정이 수입 직접지급의 대상임

○ 기관 조치 : Child Support Management System에서 수입 압류권자(사용자)에게 수입 원천징수 요청 → 당일 양육비채무자에게 통지서 발송 →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7일 이내(평일 기준) 공제액 지급

○ 채무자 조치 : 행정상 오류 청구 / (채무불이행 채무자 조치) 15일 이내 사실오인 청구

- 실업자급여(UIB)와 산재보상금을 포함한 비양육부모의 임금 혹은 다른 소득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
- 또한, 현재의 양육비 지급 의무 금액까지의 공제를 위해 고용주는 지급 기일이 지난 금액에 대한 추가적 공제 및 소급 지급 실시
- 2009년부터 DCSE는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E-IWO(전자적 임금압류 통보 시스템) 도입하였고, 현재는 10,000명 정도의 고용주들이 E-IWO 통보를 받고 있음

2) 의료 지원(Medical Support)

○ 집행 요건 : 양육비채무자가 자녀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결정 필요. 만약 이용할 수 없다면 이용하게 되는 장래에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결정 필요

○ 기관 조치 : 고용주에게 의료지원 요청 및 채무자에게 사본 송부

○ 채무자 조치 : 행정상 오류 청구

3) 세금 환급금 차감(Tax Refund Offset)

○ 집행 요건

- 연방 : TANF·Ⅳ-E 사건인 경우 150달러 이상 양육비 연체 시
  TANF 사건이 아닌 경우 500달러 이상 연체 시
- 주 : TANF·Ⅳ-E 사건인 경우 두 달 이상·50달러 이상 양육비 연체 시
  TANF 사건이 아닌 경우 50달러 이상 양육비 연체 시

○ 기관 조치 :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8월) → 대상 사건 국세청 송부(10월). 대상 사건 뉴욕 세무부서 송부(12월) → DCSE 수납

○ 채무자 조치 : 10월까지 양육비 지급 또는 이의 제기

4) 복권 당첨금 가로채기(Lottery Prize Intercept)

○ 집행 요건 : 연체된 양육비 50달러, 당첨금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

○ 기관 조치 : 매달 Child Support Management System 사건 파일을 뉴욕주 복권소에 전송 → 600달러 이상 상금 가로채기 → DCSE에 가로채기한 리스트 발송 → 30일 이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서 발송

○ 채무자 조치 : 30일 이내 이의제기

5) 운전면허 정지(Driver’s Privilege Suspension)

○ 집행 요건 : 연체된 양육비가 4개월 동안 지급되어져야 하는 금액(소급 양육비 제외) 이상이고 45일 이내 수입 직접지급(Income Execution)이 없었고 양육비 채무자가 TANF·SSI(저소득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 기관 조치 :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불이행으로 운전면허 정지될 것이라는 통지서 발송 → 대상 사건을 뉴욕 차량부서(DMV)로 송부 → 운전면허 정지

○ 채무자 조치

- 45일 이내에 전액 지급, 이의제기 또는 원만한 지급 합의
- 처음 해당 시 50% 지급 및 새로운 지급계획 제시 또는 수정 청구 진행 중임을 소명
- 두 번째 요건 해당 시 연체금 전액 지급 또는 수정 청구 진행 중임을 소명

6) 세금 및 재정 담보(Tax and Finance Referrals)

○ 집행 요건 : 연체된 양육비가 4개월 동안 지급되어져야 하는 금액(소급 양육비 제외) 이상이고 500달러보다 많으며 45일 이내 수입 직접지급(Income Execution)이 없었고 양육비 채무자가 TANF, MA, SSI(저소득 지원금) 또는 Food Stamps를 받지 않으며, PEX 절차 중이 아니어야 함

○ 기관 조치 :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불이행으로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이 담보권 설정될 것이라는 통지서 발송 → 자료 파일을 세무부서로 송부 → 재산 압수 또는 수입 원천 징수

○ 채무자 조치 : 45일 이내 전액 지급 또는 서면 이의제기

7) 신용회사 보고(Consumer Credit Reporting)

○ 집행 요건 : 연체금이 1천달러 이상이거나 2달 이상 연체인 경우

○ 기관 조치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서 발송 → 채무를 신용정보기관에 보고

○ 채무자 조치 : 연체금을 1천 달러 미만으로 줄이거나 지급되어져야 하는 금액을 4달치보다 줄임. 또는 10일 이내에 사실오인 청구

8) 재산 집행(Property Execution)

❍ 집행 요건 : 연체된 양육비가 2달 동안 지급되어져야 하는 금액(소급 양육비 제외) 이상이고, 300달러 이상이여야 하며, 지난 45일 이내 수입 직접지급(Income Execution)이 없었고, 합친 금융 계좌 잔고가 3천 달러 이상인 경우임. 금융기관 자료 대조 또는 여러 주에 걸친 금융기관 자료 대조

❍ 기관 조치 :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정보 입수 → 압류통지서를 은행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발송 → 재산이 25달러 이상이고 면제된 자금이 아닌 경우 계좌 압류

❍ 채무자 조치 : 15일 이내 사실오인 청구

- 예금계좌를 포함한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의 금융 기관의 계좌들은 FIDM에 의하여 확인
- 금융기관 계좌 동결은 출금 및 계좌이체를 제한하며, 지급 기일을 넘긴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는 제한을 풀기 위해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 비양육부모가 구체적인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면, 양육비채무는 비양육부모의 예금계좌의 예금액을 통해 지급

9) 양육비 담보 설정(Child Support Liens)

❍ 집행 요건 : 연체된 양육비가 4달 동안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소급 양육비 제외) 이상이어야 함. 보험금청구정보교환소에 데이터 대조

❍ 기관 조치 : 양육비 불이행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빚진 부동산이나 개인재산 소유자의 재산을 담보 설정 제기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발송

❍ 채무자 조치 : 전액 지급 또는 35일 이내 사실오인 청구

▪ Personal Injury Claims Seizure (상해보상금 정지)
- CSEU는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 위해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가 제기한 상해 보상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
- 비양육부모가 제기한 상해보상금 청구 내역은 보험업계가 제공하는 전국적인 상해금 청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 센터를 통해 확인

### 10) 여권 거부(Passport Denial)

❍ 집행 요건 : 연방 세금환급금을 차감할 자격이 있고 연체된 양육비가 2천5백달러 이상인 경우

❍ 기관 조치 : 세금 환급금 차감 파일을 연방 OCSE와 주 양육비이행기관에 차례로 보냄 → 여권 신청서/갱신서를 확인하여 여권 거부, 취소, 제한 가능

❍ 채무자 조치 : 전액 지급 또는 여권 거부 긴급 해제 신청

### 11) 법원에서의 면허 정지(Court Based License Suspension)

❍ 집행 요건 : 연체된 양육비가 4개월 동안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소급양육비 제외)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소환이나 영장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관 조치 : DCSE가 주의 여러 기관들에 확인하여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청구할 것이라는 경고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발송

❍ 채무자 조치 : 전액 지급 또는 면허기관이 여는 청문을 통해 결정, 양육비 재판관의 거부가 있으면, 결정 30일 후 판사에게 항소

## (4) 자녀 양육비 컴퓨터 시스템

### 1) 주 전체 네트워크

○ Albany에 있는 중앙컴퓨터센터(Central Computer Operation Center)를 통해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며, 각 지역은 중앙컴퓨터센터와 연결

- 뉴욕 주의 58개 지구 CSEU(Child Support Enforcement Unit)는 ASSETS(Automated state support Enforcement and Tracking system)/CSMS(Child Support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비 이행 담당사건을 관리·수행

○ ASSETS/CSMS는 양육비 지원에 관한 뉴욕 주 전체에 미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사건 전체 관리 및 재정회계 관리를 제공하며, 약 90만 양육비이행 사건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

- ASSETS/CSMS을 통해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들은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업무 수행

### 2) 사건 등록(case creation)

○ 지구 CSEU는 새로운 자녀양육비사건이 개시될 때마다 ASSETS/CSMS에 새로운 사례 기록 생성

- 양육권 없는 부모의 거주지 확인,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재정적인 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 기록
- 위치, 고용정보, 재정정보 검증이 필요하면, ASSETS/CSMS는 자동적으로 뉴욕의 다양한 기관과 연방 부모 위치확인서비스(the 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를 통해 확인
- 확인된 모든 정보는 ASSETS/CSMS의 사건 기록에 자동으로 기록

3) 계좌 생성 및 양육비 징수

❍ 법원의 양육비 결정이 있으면 CSEU는 사건 기록 위해 ASSETS/CSMS에 계좌 개설

❍ ASSETS/CSMS 사건 기록에 양육권 없는 부모의 고용주가 확인되면, 시스템은 그 수입 직접지급(income execution)을 명함

- 고용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income execution이 발행될 수 없으므로, 컴퓨터가 발행한 대금청구서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발송

4) 양육비 이행강제

❍ 지부 직원의 자료 입력에 기초하여, 대개의 행정적 이행강제 절차는 ASSETS/CSMS를 통해 자동으로 시작

❍ 시스템은 특정 금액이 연체된 경우, 임금 압류 및 의료 지원의 실행의 경우와 같이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발생 시 착수

5) 공지, 기록 등

❍ ASSET/CSMS는 행정정 이행강제 조치 외에 많은 추가적 서비스 제공

- 임금, 주소, 의료지원의 보장; 근로자가 개시한 다양한 서류의 생성, 다양한 관리보고서 및 수행보고서 작성, 고용주 및 우체국장에게 근로자에 관한 자동적인 공지 제공

❍ ASSET/CSMS는 서류 인류, 양육비처리센터(Child Support Processing Center)에 의한 대량 메일발송 등 지원

## (5) 양육비처리센터(Child Support Processing Center)

### 1) 지급 절차

○ 중앙 집중적인 컴퓨터 서비스와 더불어서, DCSE는 다양한 집중화된 수행 서비스를 58개의 지역사회서비스구역을 대표하여 제공

○ 1993년 뉴욕 주는 Albany에 징수, 처리 및 보증금 등 모든 양육비 지급을 위해 중앙 집중화된 지급처리기관을 설립

○ 이 절차센터는 재무대리인과의 계약 하에 DCSE에 의해 업무 수행

### 2) 고객 서비스

○ Child support Helpline(CSHL)는 전화응답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 가지지 않은 부모 및 일반 대중들에게 양육비사건에 관하여 조사
- 2014년에 130만건 이상의 전화가 CSHL에 의해 다루어졌고, 그 중 11%만 지방법원에 보내짐

○ 음성응답전화시스템은 사건 특정 정보 및 일반 프로그램 정보 제공

○ 고용주 전화상담서비스(Helpline)는 전화문의에 대응해서 소득공제. 의료지원 수행을 준수하는지 조사
- 수입 직접지급에 관해 고용주를 교육하고, 양육비 송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

### 3) 전자 의사소통 시스템(ECS,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 지방법원과 센터 간 전자적인 의사소통 제공

○ ECS는 지역지구에 서신-현금지불, 외국 보증금 일지, 가계정서류, ASSETS/CSMS의 확실한 지급을 요하는 “거부”, 악용된 지급기록,

"부정적인 이체(negative transfer)"의 확정, 이송 이미지의 회수(payments-returned-to remitter images), "pulls-and-voids"의 요청, 진행 중 서류, 불충분한 금융자산, 회수된 보증금, 고객서비스위탁서, 고객서비스 보고서 제공

4) 다른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

○ 센터는 수입 지급금(incoming payments)의 진행과 ASSETS/CSMS에서 전자적으로 받은 자료, 서류 및 다양한 출처의 전화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중화된 기능도 수행

○ 다른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양육권 가진 부모에게 직불카드, 계좌, 수표를 통한 양육비 지불
- 해외 자녀 양육비 기관에 온라인 이체
- 주소 확정을 위한 우편 정리, 고용주 확정을 위한 임금 정리
- 소득집행, 재산압류, 생계비지수 상승에 따른 양육비 변경(COLA) 공지,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공지의 인쇄·발송, 의료집행, 은행계좌압류 공지(restraining notices for bank account seizure) 등
- 자녀 양육비 신청 서류로부터 자료 수집
- IV-D의 표제가 없는 지출의 지불 및 영수증 발행
- State Directory of New Hires의 유지

5) 웹사이트(www.childsupport.ny.gov) 운영

○ DCSE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양육비 이행강제 프로그램(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가지지 못한 부모는 비밀번호로 보호된 접속을 통해 현재의 지급 및 지급금의 목록 확인 가능

○ 매주 212천명 이상이 보안구역에 접속

## 2 뉴욕 주의 기관방문 활동

### (1) OTDA 및 지역사무소

1) 주요 질의·답변사항

○ 뉴욕 주 정부와 지역사무소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뉴욕은 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자녀양육비 이행은 지역 구 단위로 하는 것이 특징임. 가족기능 강화와 복지지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양육·비양육부모 모두를 지원함.
- 뉴욕 주는 58개 지역으로 나뉘고, 58개 지역에서 사무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건 수는 93만 건이 있음. 가장 작은 구의 경우 148건이 있고 직원 1명이 이를 처리하고 있음. 뉴욕시에만 주 전체의 42%정도(33만 8천건)를 가지고 있으며, 뉴욕 주에는 60명의 직원 있고, 뉴욕시에만 직원이 800명이 존재함. 버지니아는 양육비 이행까지 주정부에서 수행하여 주 정부 시스템이 큰데 비해, 뉴욕은 구 단위로 수행하기 때문에 60명밖에 안 되는 것임

○ 뉴욕의 자동화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 주 정부는 관리감독만 하고 집행은 지역사무소에서 하나, 시스템은 주 정부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중앙집권화 되어 있음. 이러한 시스템 구축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지역사무소들의 비용을 모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높아지는 성과를 거둠
- 이러한 중앙 집권체제는 뉴욕 주 차원에서 지역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양육비를 양육부모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이와 같이 중앙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운영하여 이를 연방정부에 보고함

○ 뉴욕 주가 다른 주보다 조직·제도 상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

- 뉴욕주는 다른 주에 비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되어서 돈 받는 것도 안내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컴퓨터로 진행함. 돈 안 낼 경우 급여압류로 전체 양육비 받은 것은 72%정도를 받아내고 연방 및 주 세금 환급금 압류, 여권발급 거부, 운전면허 정지, 은행계좌 압류를 하고 있는데, 연방 및 주법으로 은행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1].
-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비양육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계좌에 일정 금액 이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며, 집행 시 비양육부모에게 통보 의무를 거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비양육부모는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집행을 정지하고 행정법 차원에서 이를 해결한 후 집행이 가능함
- 뉴욕은 양육비이행기관 등 Human서비스 지원 관련 조직 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텍사스 주나 오리건 주의 경우에는 검찰청 산하, 메사추세츠 주와 플로리다 주는 주세청 산하, 그 외에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경우도 존재함
- 또한 ① 행정명령으로 바로 이행까지 강제하는 주와 ② 사법제도와 결합되어 이행을 강제하는 주가 있음
  - 뉴욕은 당사자 합의도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여, 사법제도와 결합되어 이행을 강제하는 주에 해당함
  - 행정명령으로 이행까지 강제하는 주로는 콜로라도 주, 워싱턴 주, 오리건 주 등이 있음

1) 은행의 책무로 고객 사회보장번호와 양육비이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번호를 매치하여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확인되면 양육비이행기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미 이혼할 때 법원의 양육비 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바로 은행에 압류 통지를 보내 주 기관이 양육비를 받아 양육부모에게 이전하여야 함

## (2) 가정법원 판사 면담 주요내용

### 1) 주요 질의·답변사항

❍ 뉴욕 주에서는 자녀에게 언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뉴욕 주에서는 21세까지이나, 자녀가 군에 입대하거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일찍 끝날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Child Support Standards Act”에 기초하여 산정됨
- 먼저, ① 법원에서는 양쪽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 ② 특별한 지출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소득을 감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지출(전기세, 카드값, 월세 등)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 소득을 감하는 요인은 아님
- 법원에서 위 총 소득을 결정하면, 자녀 1명은 소득의 17%, 자녀 2명은 25%, 3명은 29%, 4명은 31%, 자녀 5명 이상은 35%의 비율로 양육비를 지급함
- 위와 같이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공공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에도 최소한 월 25 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뉴욕 주에 자녀가 살고 있다면 양육비 신청은 어디 법원 관할인가요?

-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의 home state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Home state란 자녀가 최소한 6개월 동안 거주한 state를 의미
- 자녀가 최근에 새로운 주로 거주를 옮긴 경우에는, 자녀가 그 곳에서 최소한 6개월 동안 거주할 때까지는 새로운 주에 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그 때까지는 자녀가 그 직전 6개월 동안 거주한 주에 신청하여야 함

# 3 버지니아 주의 양육비이행제도

## 1 제도 개요

### (1) 일반 현황

#### 1) 조직

○ 버지니아 주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내 “양육비이행과(Division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운영

- Division 내 Systems, Admin Operation, Program Operation, District Office East, District Office Central, District Office West의 6개 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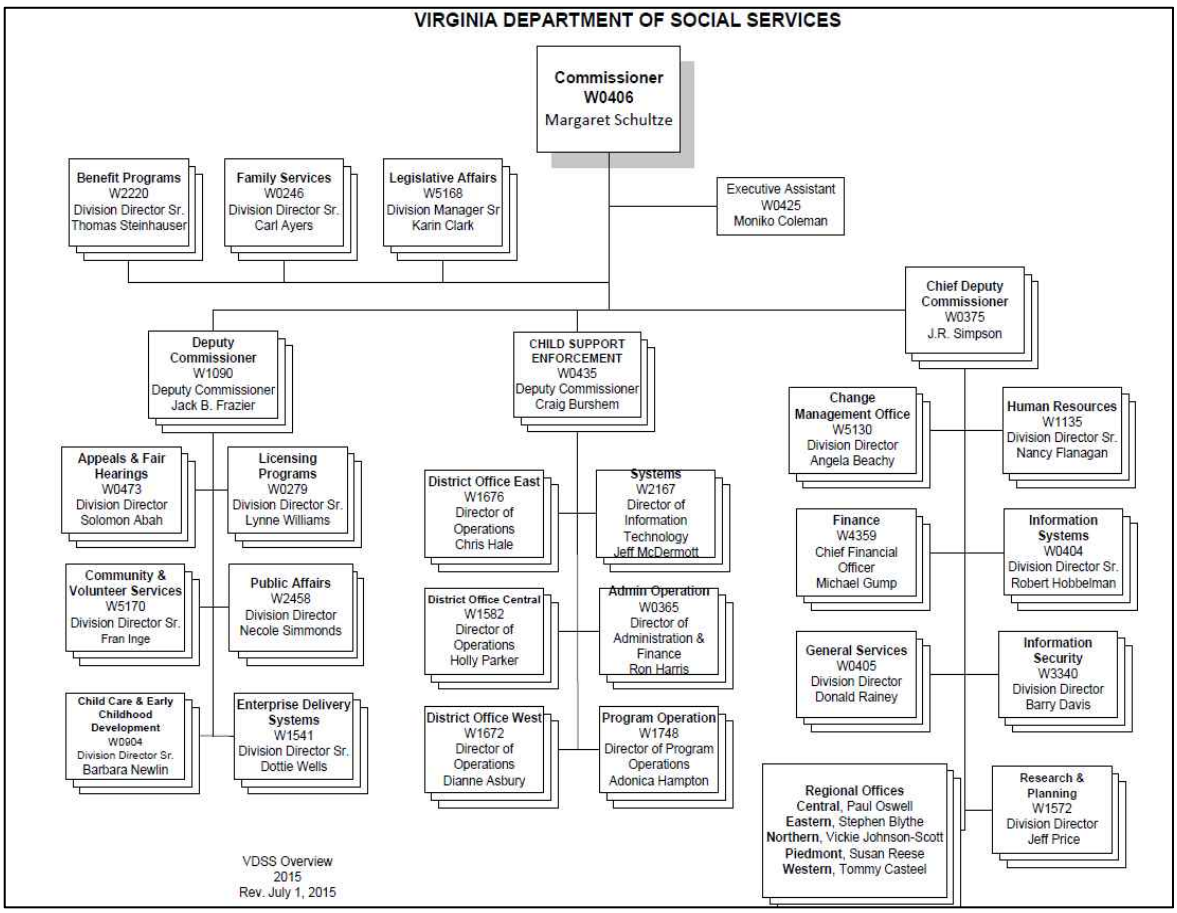


○ 버지니아 주내에 21개 지역 사무소(District Office)가 있음

2) 법적 근거

○ 1975년 제정 연방 사회보장법 Ⅳ-D에 따라 시행

3) 미션

○ 법에 따른 비양육부모의 위치 찾기, 친부권 확립, 양육비 결정, 결정의 이행강제, 양육비 징수 및 분배하는 양육비이행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건강과 자립 증진

4) 주요 통계(1년 : FY 2013년~2014년)

○ 총 양육비 징수액 : 657.2억 달러(전년 대비 10만 달러 이상 징수) / TANF 징수액 : 4천1백7십만 달러

○ 새로운 양육비 결정 : 28,188건 / 친부권 확립 : 28,188건

○ 운전면허 제한을 통한 징수액 : 2천6백6십만 달러 / 세금환급금 차단을 통한 징수액 : 4천6백1십만 달러 / 신규 채용자 대조 통한 징수액 : 7백만 달러 / 임금 압류를 통한 징수추정액 : 561백만 달러 / 여권 거부 통한 징수액 : 277,192 달러 / 양육비 일시불지급 통한 징수액 : 1천4백만 달러 / 법원 명령 통한 징수액 : 1백3십만 달러

○ 비용 대비 효율성('12년 1 달러 들려 7.02 달러 징수, 주 가운데 10위)

○ 담당 사건 수 : 347,477건(아동 327천명)

○ 임금 압류를 통한 지급 91% / 전자 지출 93%

○ 대표전화 60초 이내 응답률 90%, 13년 콜센터 응답 4,645,478건

## (2)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

### 1) 지원 대상

○ 양육부모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비양육부・모

○ 만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청구 가능

### 2) 지원 신청

○ TANF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DCSE에 자동 접수됨
- 신청 후 3주 내에 DCSE에서 연락

○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상대방 정보(아는 범위에서 제공)
- 성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 번호, 현재와 과거 주소, 현재와 과거 고용주 이름과 주소, 수표(paycheck stub), 속했을 만한 조합·전문협회·클럽·기타 단체, 부모 이름과 주소, 전문 직업 관련 자격증, 자동차 등록번호, 재산(예 : 집, 배, 은행 계좌 등)

○ 양육비 지급명령서에 부모 모두의 집과 직업 정보가 공개
- 다만,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보호받거나 안전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진술서를 작성을 통해 보호 조치 가능

○ 신청 사건 관련 중요 정보 변화 시 신고
- 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더 이상 다니지 않은 경우, 결혼하거나, 양육부모와 더 이상 살지 않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모가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경우, 부모가 수감되거나 사망한 경우

3) 친부권 확립

○ 친부권 확립 방식

- 부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지 가능하며, 신청서는 버지니아 아동양육원, 대다수 병원, 보건소와 리치몬드에 있는 기록원에서 작성 가능(출생 시부터 언제든 신청)
- 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나 부자관계 부인 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정 가능하며, 법원은 친권 확정 위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친부로 지목된 자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 시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친권 결정 가능

○ 혼인 중 태어난 자의 경우 남편이 친권자이며, 자녀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짐

- 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믿어지는 경우, 법원에 자신이 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음

4) 비양육부모의 위치 찾기

○ 친권 확정 전 비양육부모와 연락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어떤 법적 처분 전 비양육부·모에게 고지하여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 부여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 DCSE에 연락 정보를 알리도록 규정

○ DCSE에서 비양육부·모를 찾은 경우 DCSE로 오도록 하거나,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을 고지해야 함

○ 비양육부·모 위치를 찾는 방법 중 ‘추정적 친부 등록’이 있음

- 성관계 후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남성은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다른 개인 식별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DCSE는 등록부를 열람하여 비양육부에게 친부권 확정 위해 연락

5) 양육비 결정

❍ 결정 내용

- 친부권 확정된 후 아이의 양육비 결정에 관한 일 진행
- 양육비 지급결정서에는 비양육부·모가 매달 지급할 금액과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어느 부모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결정서에는 집, 직장, 전화번호 등의 변경을 알릴 것을 요구

❍ 양육비 산정 방법

- 버지니아주는 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사용
- 산정 시 고려 사항은 자녀에게 필요한 자금 정도와 부모의 소득
-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은 직장 근무 시 자녀 돌봄 비용, 자녀의 건강보험료 그 외 부모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녀의 수

❍ 법원의 양육비 결정 필요 여부

- 버지니아 법은 DCSE가 행정적 양육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DCSE는 빠른 이행을 위해 법원의 명령 대신 최대한 행정적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해 노력
-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 가능하며, 예를 들어 자녀에게 다른 독립적 재정 자원이 있는 경우 등 정작 참작 사유가 됨
- 행정적 양육비 결정 후 10일 내 정작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부모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양육비 결정의 효력 발생

-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지급결정서가 송달되어 받는 순간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악의의 비양육부모가 의무 회피 위해 도망칠 경우 DCSE는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다시 파악해야 함

- 법원 양육비 결정의 경우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6) 양육비 이행강제

○ 개시 시점

- 30일 이상 양육비 지급 지체 시 강제 제재 시작

○ 주요 이행강제 방법

- 대표적 지급 강제 방법은 급여 직접지급이며, 비양육부모가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주로 옮겨도 급여를 통한 직접지급 가능
- 세금환급금 차감, 담보 제공, 신용정보회사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소득 또는 금융 자산 압류, 버지니아주 운전면허 정지 등
- 강력한 강제 수단으로 비양육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음

7) 양육비 조정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재산정을 위한 검토와 조정을 의미

○ 재검토는 양육비지급결정을 받은 후 매 36개월마다 행해지며, TANF의 경우 DCSE가 36개월마다, 또는 아래의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 행해짐

- 부모의 총 소득이 25% 의 변화가 있을 때
- 양육부모의 자녀 돌봄 비용이 25% 변할 때
- 의료비가 현재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은 때
- 의료비 비상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때
- 의료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보험료 또는 부담비용이 25% 변할 때
- 현 양육비지급명령에서 자녀가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때

○ 막내 아이나 외동 아이가 만 18세를 넘기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6개월이 지나거나, 과거 양육비에만 관한 것일 경우 DCSE는 재검토를 하지 않음

○ 재검토 과정은 6개월 내외 소요

8) 양육비 지급

○ DCSE를 통한 지급

- DCSE는 양육비를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지급
- 법으로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부모로 받은 양육비가 현재의 양육비 분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로 지급

○ 양육비 지급이 TANF 혜택에 미치는 영향

- TANF 를 받고 있는 경우, 양육비는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월의 100 달러는 양육부모에게 지급
- 이 100 달러는 TANF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나머지 양육비는 해당 월 주정부와 연방이 지급한 TANF 금액를 상환하며, 그 나머지 양육비는 주정부와 연방이 과거에 지급한 TANF 금액을 상환
- 과거에 TAEF를 수급 받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와 연방이 과거에 지급한 수급비 상환 전에 과거 양육비를 먼저 지급

○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 가능 여부

- 양육비지급결정이 DCSE를 통해 지급되도록 한 경우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면 안됨
- 이 경우 양육부모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 선물로 간주되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양육비를 직접 받은 양육부모는 이를 DCSE로 보내야 함

○ 양육비에 대한 이자

- 양육비지급결정을 버지니아 주에서 한 경우 DCSE는 과거 양육비에 이자 부과 가능

9) 서비스 비용

○ 비양육부모에게 부과될 수 있는 비용:

- DCSE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 DCSE가 사설기관을 통해 고지한 경우 드는 비용, 친부권(인지) 청구 비용, 세금환급액 차감 과정에 드는 비용, DCSE가 이행 강제과정에서 다른 주 정부에서 부과한 비용, 재산을 압류 또는 처분하는데 드는 비용, 서류 발급 비용

○ 양육부모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 서류 발급비, 양육부모가 첫 유전자 검사 불복 시 유전자 검사비
- TANF를 받지 않으며 양육비 500 달러 이상 징수·지급된 IV-D 신청의 경우 연간 25 달러를 내야하며, 신청 취소 후 6개월 내 재신청하는 경우 25 달러를 내야 함.

10) DCSE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 양육, 접견 또는 재산 분할과 같은 문제는 지원하지 않음

○ 양육비 사건과 병행 청구되지 않을 경우 별거수당을 징수해주지 않음

○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주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음

- DCSE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 정부를 대변하는 것임

○ 소득이 없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지 않음

○ DCSE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법적 조치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또는 사건에 대한 특정 조치를 원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 필요

## 2 버지니아 주의 기관방문 활동

### (1) DCSE 및 지역사무소

1) 주요 질의·답변 사항

○ DCSE 변호사의 역할은?
- DCSE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 양육부모를 개인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신청인인 양육부모가 사회복지 사업지구의 변호사나 직원에게 서명 또는 구두로 제공하는 허위복지수급을 포함한 어떠한 정보도 기밀 보장이 되지 않음
- 이러한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DCSE 변호사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양육부모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음.
- 만약, 양육부모 개인의 변호를 원한다면 별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양육비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자료를 연수단에 제공하여 가상의 사례를 주고 양육비 산정 실습을 하였음

○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시 소재지가 드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 양육비 결정에는 양부모 모두의 주거와 직장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는 비밀유지 진술서(Affidavit of Nondisclosure)를 작성해두면 보호조치가 이루어짐

### (2) 버지니아 주 헨리코 지역 청소년·가정법원

※ 양육비 관련 청문 현장 탐방

# Ⅲ. 캐나다(온타리오 주) 사례

## 1 온타리오 주의 양육비이행제도

### 1 제도 개요

#### (1) 일반 현황

1) 법률

○ 캐나다 연방 차원의 Divorce Act, 주 정부 차원의 Family law Act, Children's Law Reform Act가 적용

○ 연방 Divorce Act

- 캐나다 전역에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킴
- 자녀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권, 배우자 부양료 등 권리 의무 규정을 포함
- "혼인관계 중의 자녀"는 혼인 중 또는 혼인상태가 아니지만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
  - 1997.5.1.일 연방 Divorce Act에서 양육비 가이드라인 규정
- "배우자"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전 배우자를 포함
  - 배우자 부양료 산정기준은 같이 산 기간, 같이 산 동안 각 배우자가 수행한 역할, 그 외 각 배우자의 양육과 관련된 명령·합의 등임
- 캐나다는 파탄주의(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도 이혼 가능)를 취하고 있으며, 기혼자가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이혼 신청
- 이혼 명령은 캐나다 전역은 법적인 효력을 미치며, 각 지역 법원에서도 등록될 수 있고, 그 법원의 명령으로서 강제될 수 있음
- Divorce Act에 따른 양육비 결정(support order)는 연방 고등법원, 연방 고등법원 산하 가정법원 소관임

❍ 온타리오 주 Family law Act

- 자녀 양육비 지급 대상이 되는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더라도 실제 가족의 자녀로 취급하여 양육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

  * 어떤 남성이 전처가 데려온 자녀를 함께 양육하다가 헤어진 경우, 그 남성은 전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 양육비는 Child Support Guidelines에 따라 산정됨

- 배우자 또는 파트너 부양료

  • 배우자란, 법적으로 결혼했거나, 3년 이상 같이 살거나, 3년 이상 살지는 않았지만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상대방을 의미

  • 동성 파트너는 위 배우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동성 상대방을 의미

  • 배우자 부양료는 나이, 기간, 상대방이 전적으로 의존했는지 여부, 실제로 자녀를 누가 관리했는지 등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일방이 장기간 가사만 한 경우 따로 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동안의 공로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 만약 3년이나 5년 정도의 단기간의 동거였고,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음

- 양육비 결정은 Ontario Court of Justice, Superior Court of Justice, Family Court에서 수행

- 연방에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규정함에 따라 온타리오 주 정부는 1997.12.1. Family Law Act의 한 파트로 가이드라인 규정

  •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

  * 양육비 채권자의 수입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샘플 표 추가)

  • 양육비 금액의 변경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의 변화가 있어야 함

  • 가이드라인은 매년 소득 자료의 제출을 요구

  • 양육비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 자료가 확정되면, 양 당사자는 새로운 양육비를 협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양육비 결정

❍ 온타리오 주 Family Responsibility and Support Arreas Enforcement Act(FRSAEA)

- 제재조치(양육비 원천징수 통지, 자발적 연체금 지급 스케쥴(VAPS), 몰수·공매,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 제공, 압류, 개인 재산·부동산 담보, 운전면허 정지, 연방면허(여권 등) 정지, 불이행 청문회 통한 수감

3) 조직 및 업무

❍ 온타리오 주의 양육비 이행 업무는 FRO(Family Responsibility Office)에서 수행

❍ FRO는 the Family Responsibility and Support Arrers Enforcement Act에 근거하여 1996년에 온타리오 주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내에 설치

**<연혁>**

- 1987년까지 : 사적 강제(civil courts)
- 1987년 : MAG 내 양육비 이행 업무를 위한 10개 사무소 설치
- 1997년 : 새 법에 따라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 MAG 내 FRO 설립
- 2001년 :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로 주무부처 이관

❍ FRO의 업무

- 온타리오 주 법원 등의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 지급 명령에 따른 이행 강제
-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채권자에게 이전
-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다양한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이행 강제
- 온타리오 주 밖에 거주하는 비양육부모의 경우, FRO가 양육비 이행협정을 맺은 법원 등((캐나다의 모든 다른 주와 몇몇 다른 국가가 포함)과 협력 업무

○ FRO 주요 부서

- 고객서비스부(Client Service Branch)
  -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 명령 이행, 다른 주와 국가 간 명령 이행, 사건 관리, 민원 응대
- 전략운영부(Strtegic & Operational Effective Branch)
  - 발전전략 수립, 사업절차 개선, 프로젝트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 및 협상, 직원 교육, 기관 협력, 조사, 연구
- 재정집행부(Finance & Administation Branch)
  - 양육비 지급 업무, 은행 계좌에 대한 관리, 당사자들의 금융 문의에 대한 조언, FRO 계좌에 대한 은행 계정 조정, 회계 감사, 조달, 시설 관리 등
- 양육비서비스부(Support Services Branch)
  - 우편업무, 문서 관리, 문서 기반 서비스 제공자 감독, 연방 판결문·집행문 기록·저장 등
- 법률서비스부(Legal Service Branch)
  - 심리 및 소송절차 수행, 법률적 조언 제공, 계약서 작성 및 조달 업무 조언, 당사자 심문 및 FIPPA 문제에 대한 조언 제공

4) 인력 : 직원 약 450명

5) 예산 : 연 약 5천만 달러

6) 주요 통계

○ 약 18만 건의 사건을 다룸

○ 양 당사자와 제3자를 포함한 약 38만 명의 고객이 있음

○ 월 양육비 5천만~6천만 달러 징수, 2014~2015년 1년 간 6억7천8백만 달러 징수

## (2)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

### 1) 신규 사건 등록

○ 법원 결정(Court Order)을 받으면, FRO는 고객정보를 등록
- 법원에서 결정서를 FRO로 자동 송부하는 체계(양육부모 제출 불필요)

### 2) 양육비 징수

○ 등록 후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 또는 다른 소득 원천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 개시

○ 양육비가 잘 이행되는 경우, FRO의 역할은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전달하고, 양육비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임
- (소득원천에게) 양육비 원천징수 통지 → 징수(현금, 수표, 입금)

### 3) 양육비 이행강제

○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FRO는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함

○ 단계별 조치
- 1단계
  - 강제조치 전 사전 경고 통지
  - 자발적 연체 지급 스케쥴(VAPS) 제출 요청
  - 연방 차원의 이행 명령 강제 지원
  - 몰수 및 공매
  -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 제공
  - 복권 당첨금 가로채기(1,000 달러 이상)
  - 개인 재산 담보

- 2단계
  - 소득 원천 조사
  - 운전면허 정지
  - 연방면허 & 여권 정지
  - 은행 & 일시금 압류
  - 토지에 대한 section 42 등록(부동산 담보)
  - 불이행 청문회
  - 수감

### (3) 주요 쟁점 및 발전 방향

1) 주요 쟁점

○ 당사자들은 이혼 과정에서 겪는 개인적 어려움과 함께, 길고 복잡한 법률 절차로 인해 FRO에 부정적 입장인 경우가 많음

○ FRO의 두 당사자 그룹(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권자) 간 견해 차
- 양육비 채무자들은 FRO의 집행과정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
- 양육비 채권자들은 FRO의 집행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

○ 양육비 채권자들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있는지, 지급 의사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양육비 채권액이 지급 기일에 지급되기를 기대

○ 집행 부서의 업무량은 캐나다 전역의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음
- 캐나다의 다른 기관처럼 FRO는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에 연체된 금액을 면제하지 않음

2) 발전방향

○ 법령 검토

- FRSAEA, 지침,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육비 지급 준수, 유연한 업무 프로세스,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잠재적인 개정안 검토

○ 당사자 지원 전략

- 당사자 지원 전략 수립을 통한 당사자 경험 증진,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직원 교육; 민원 해결을 위한 보다 간편한 새로운 프로세스 개발

○ 사업 최적화 검토

- 양육비 채무 징수금 증액 및 이행강제 효과성 제고 위한 현재 사건 관리 능력 검토

○ Inter-jurisdictional Support Orders Review

- 다른 부모가 온타리오 주 밖에 거주할 경우, ISO는 법원과 함께, 다른 관할에서 온타리오 주의 집행 권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와 미국의 주 및 다룬 국가들의 다른 관할 법원과의 조율을 도와줌
- 점진적인 업무의 증가로 업무의 분배 문제와 ISO 프로세스의 지연을 고려, 현재 ISO 업무 현황과 그 구조에 대한 검토 진행 중

○ 온라인 셀프서비스

-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실행하여 고객들이 그들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택권을 부여, 프런트 라인 직원이 사건 관리에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보안 이메일

- 스텝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메일(첨부파일 포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툴을 제공

○ 자녀 양육비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

- FRO는 Ministries of the Attorney General(검찰청), Finance and Government, 그리고 Consumer Services와 조화롭게 일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양육비 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임

○ 연방 자료에 대한 접근

- FRO는 채무자를 추적하여 찾아내고 이행강제력을 강화하는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방식을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 지역 및 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

○ 등록 처리절차 평가

- 평가업무는 갭을 감별하고 처리절차를 오버래핑하여 현재의 등록 절차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절차임
- 이 프로젝트는 등록 완료에 소요되는 30일간의 표준 서비스 기간을 줄이기 위한 기회임

○ 전자거래 전략

- 현재 상태와 목적이 사용자 친화적인지, 고객에게 자동화되고 안전한 지불 옵션인지를 평가·분석

○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 2007년 자녀 양육비와 다른 형태의 가족 생활비(양육비)의 국제적인 회복(되찾음)에 대한 헤이그 국제협약은 사적인 국제법 장치
- 자녀와 배우자 양육비와 연관하여 국경을 가로지르는 합의와 이행 강제, 실행, 생활비(양육비) 명령의 변경에 대한 법적인 틀 제공
- 온타리오 주는 2007년 협약을 캐나다가 비준·실행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연방- 주- 지역의 업무 그룹의 일원임

## <FRO 이행강제조치 사례>

1. 이행강제에 대한 도전을 극복한 사례

- 한 양육비 채무자가 캐나다와 남아메리카를 오가고 있는데, 남아메리카에 많은 시간을 거주하며 남아메리카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FRO는 여러 가지 이행 강제조치를 취하였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음
- 양육비 채무자의 주목을 끄는 행위는 여권정지를 포함한 연방면허거부에 대한 알림장이었음. 채무자는 FRO에 전화하였고 그의 연체금을 지불하겠다고 동의하였으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음. 그리고 나서 채무자의 여권이 정지됨.
- 지난해 말에 양육비 수령자가 FRO에 채무자가 온타리오에 있는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고 말해 줌. 2012년 말에 FRO가 이미 영장을 신청하였음. 영장은 양육비 채무를 갚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의 처분에 개입할 수 있는 것임. 다른 이행 강제조치와 달리, 양육비 채무자는 이 이행강제조치를 알 수 없음.
-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등록함.
- 2014년 2월에 양육비 채무자는 영장과 유치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빚진 돈 전부를 지불하는데 동의함. FRO는 연체금 전부인 10만 달러 이상의 보증수표를 받아냄.

2. 강력한 이행강제 조치

- 건강관리 전문가인 양육비 채무자는 몇 년 동안 말을 듣지 않았음.
- 일련의 점진적인 이행강제조치를 거쳐, FRO는 50만 달러를 넘는 실질적인 연체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문을 시작했음.
- 채무불이행 청문에 대한 법원 절차 동안, 판사는 채무자에게 면허정지 기간 중 매달 1천 달러가 넘는 차의 리스비용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음.
- 최종 채무불이행 명령에서, 판사는 2만5천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15일간 수감되도록 명령함. 또한 판사는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175천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90일 간 수감되도록 결정함. 채무자는 밤새도록 수감되었고 다음날 2만5천 달러를 지불함.
- 최종 채무불이행 명령이 제기되기 전에, FRO는 채무자가 대략 280천 불의 가치가 있는 RRSP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 채무자는 그 계좌를 점차 고갈시키고 있었음. 이것을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보안관에게 RRSP 자산을 동결하도록 영장과 자산 동결을 요청함.
- 2014년 3월에 FRO는 180천 달러 상당의 수표를 받아 수령인에게 건네줌.

3. 적극적인 사건 담당자가 빠르게 커가는 연체금을 징수

- 때때로 큰 연체금이 빨리 쌓이기도 함. 매달 자녀 양육비를 9백 달러씩 지불해야 했던 한 자영업자는 FRO가 새로운 명령을 받은 2012년 6월까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 2012년에 법원에 제기됨.
- 새 명령은 이 사건에 배우자 양육비를 포함하도록 변경됨.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양육비 의무가 결합되어 매달 3,120 달러로 증폭됨. 배우자 양육비 의무 시작일은 2011년 6월이었음. 결과적으로, 새 명령은 이 사건의 연체금을 갑자기 37,332 달러로 늘림.
- 이 사건을 맡은 이행강제서비스조사관(ESO)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연체금 잔금을 갚고 자발적인 연체금 변제 스케줄(VAPS)을 제출하도록 편지를 보냄. VAPS는 양육비 채무자와 FRO 간의 협약서인데, 매달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면서 FRO에 양육비 연체금의 일정비율을 갚겠다는 내용임. VAPS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무자는 FRO에 평가받기 위해 재정서류를 제출함. ESO도 역시 양육비 공제 통지서를 연방에 보내고, 연체금 지불을 위한 EI이나 CPP와 같은 돈을 잡아내려고 함.
- 양육비 채무자는 VAPS 편지를 받은 한 달 후 FRO에 접촉하여 자신이 빚진 연체금 전부를 지불하겠다고 재빨리 반응함. 그때 이후, 채무자는 다시 양육비를 잘 내고 있음.

## ②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기관방문 활동

### (1) 캐나다 온타리오 주 FRO(Family Responsibility Office)

1) 기관 설명 주요내용

○ FRO는 이 건물의 지하와 4, 5, 6, 7층을 사용하고 있음

○ 지하 서류보관창고에는 현재 오픈된 사건만 18만 개의 서류가 있음. 1987년까지 거슬러감. 자녀양육과 배우자 부양까지 취급하고, 새로 돌아오는 사례도 존재함

- 법원에서 종이 사본을 원하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으면 계속 보관하며, 제일 오래된 것은 27년째 존재하는 것도 있음
- FRO는 1987년에 시작되었으나, 그 전에도 이름이 다른 기관이 존재했고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보관함

○ 전화로 돈 낼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 두 층을 할애하고 있고, 그 밖에 교육훈련실도 존재함

- 법도 알아야 하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 결정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임

○ 법원명령 수행 도와주는 것. 온타리오 주의 것이 대부분이지만, 10% 가량 온타리오 주 외의 다른 주와 미국의 주 등 주를 벗어난 사건들이 존재함

- 한국도 준비가 되면 협조가 가능할 것임.

○ FRO는 받는 사람과 돈 내야 할 사람 사이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돈 내야할 사람을 주로 담당하는 곳과 받는 사람 담당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덜 복잡함. 어떤 식으로 받아낼지 결정하는 사람으로 지금 실험 중임.

- 돈 내는 사람이 돈 내는 것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폭탄테러 협박도 좋고 실제 찾아와 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것은 중요함(처음 들어올 때 총탄이 안 뚫리는 문. CCTV 등)

❍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은행계좌를 통해서, 직장에서 받아내는 방법. 수표를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와서 내는 사람도 존재함.

- 돈 내는 곳에는 1층 로비에 있는 안전담당직원이 동행하여 돈을 내게 됨. 어떤 경우는 2만불을 현금으로 여행가방으로 넣어서 오는 사람도 보게 됨.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절대 물어보지 않고, 돈을 세고 맞으면 영수증 주고 그것으로 끝임. 돈을 내게 하는 방법 중 최고로 강한 것은 감옥에 보내는 것인데 감옥에서 다른 사람 대신 보내서 돈을 내면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 누구를 보냄. 밀린 돈인 2백만불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돈임. 보통은 250불 아니면 400불 정도. 한 달에 2만 5천불도 존재함. 가정마다 상이함

❍ 사건등록하는 곳도 별도로 있음. 변호사를 위해 법원에 들고 갈 서류를 만들어줌. 모든 법원들이 아직은 전자적 방식이 아니라 종이로 왔다갔다 함. 2주 전에 미리 준비해둠. 법원에서 새로운 명령이 FRO로 오면, 컴퓨터 입력한 다음 하나의 사건이 오픈됨. 모든 부모가 법원의 명령서를 가지고 있고 전자카피 형태로 전환함

❍ 돈 내야하는 사람의 일부분은 돈내기 싫어 종적을 감추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함(Trace and Locate Officer). 이들은 정부부처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운전면허증이나 집세를 냈는지 등등을 추적함

2) 기타 활동

※ 사건 파일 보관소, 양육비 직접 전달 장소, 직원 사무공간 등 전체적인 사무실 견학

## (2) 온타리오 주 지역 가정법원

1) 주요 질의·응답

○ 온타리오 주에서 양육비 불이행 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은?

- 처음에는 우선 자발적으로 지급하도록 시간을 주고, 점점 좁혀나감. 이야기듣고 지급합의서를 만들어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도 안 듣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강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경우 순수입의 50%를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는 방법이나 신용부서(엄청 중요한데)에 신고하는 방법도 활용함. 지급의무자의 개인적인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가시켜놓으면 몰래 팔려는 경우 팔더라도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음.
- 이런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않으면 공격적인 방법을 활용하는데, 운전면허 정지, 연방정부에서 받은 각종 자격, 예를 들면 여권정지. 최종적으로는 변호사가 관계되는 상대방에게 궐석재판을 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추구함.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할때까지. 아니면 수감기간을 정해 돈을 내야 하는 스케줄을 짜고 거기에 감옥에 가야 하는 스케줄을 붙임.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불씩 주고 안 내면 한번씩 빠질 때마다 10일씩 감옥에 가야 하고, 그 명령 이후 10개월이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내면 5,000불이 되고, 5000불을 한꺼번에 내기 전까지 100일동안 감옥에 갇히게 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80일까지 감옥에 수감하게 됨.

2) 기타 활동

※ 법원 방청을 통해 양육비 관련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

### (3) 온타리오 주 현지 변호사(김연재 변호사, Leonard 변호사) 면담

1) 주요 질의·응답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양육비 관련 법·제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 온타리오 주의 양육비는 법에 근거하고 있는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됨.
- 양육비 관련 내용은 각 주에서 알아서 하고 있음. 캐나다 각 주는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이 담당하고 있는데, 온타리오 주는 MCSS(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이 담당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소속 변호사가 FRO(Family Responsibility Office)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음
- FRO는 법원 판결이 있거나 별거계약이 법원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 집행함. 양육비 결정은 법원에서 하고, 판결이후 FRO로 보내짐. 판결(법원)따로 집행(FRO)따로 체계로 운영됨. 별거하면서부터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혼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
- FRO는 양육비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불이행시 편지로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법원에 가서 판사의 명령으로 운전면허·여권 정지, 세금환급금 공제, 최후의 수단으로 수감될 수 있음
- 이혼법과 가족법에서 '양육비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Ⅳ. 미국·캐나다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1 제도의 특징

| 구 분 | 미 국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
|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 인식 | 양육비 이행책임 인식 높음 (친생부모가 아니더라도 실제 양육한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 | 좌 동 |
| 접근 전략 | 가족중심 전략 (비양육부모의 면접권, 가정폭력 방지 등 가족관계 증진업무와 연계하여 자녀의 정서적 지원 등도 종합 고려, 예방적 접근) | 양육비 이행에 중점 (양육비 이행이 자녀 양육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입장, 가족 관련 업무는 사회서비스기관의 몫) |
| 조직 형태 |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 주 정부 기관 |
| 인력·예산 | 미 전역 : 54,569명, 연 57억 달러 | 450명, 연 5천만 달러 |
| 지원 신청 | TANF 등 복지수급 신청 시 양육비이행 지원 자동 신청 체계 | 법원 결정 후 결정서를 양육비이행기관에 자동 송부하는 체계 |
| 수급 방식 | 양육비이행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수급 (이행기관이 징수하여 양육부모에게 직접 전달) | 좌 동 |
| 조사 권한 | 채무자 동의 없이 소재, 고용, 의료, 소득, 재산 정보 등 파악 가능 (타 기관들과 정보 공유 원활) | 좌 동 |
| 제재 조치 | 강력한 제재 수단 (뉴욕 주의 경우 불이행 시 법원 결정 없이 행정 상 이행강제) | 강력한 제재 수단 (온타리오 주의 경우 불이행 시 일부는 행정 상, 일부는 법원 통해 이행강제) |
| 양육비 가이드라인 | 법령에 양육비 가이드라인 규정, 구체적인 산식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자동 산출 가능 | 법령에 양육비 가이드라인 규정, 구체적인 산식 활용 |
| 자동화 시스템 | 연방-각 주, 주-고용자 등이 연계된 자동화된 정보화시스템 (CSENet, e- IWO, QUICK 등) | <미확인> |
| 기 타 | TANF 수급자의 경우 징수된 양육비로 복지급여 비용 상환(양육부모에게 일부 금액 전달) | - |

### (1) 미국 제도의 특징

○ 사회 인식 : 양육비 이행책임 인식이 높음

-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강력한 조사권한과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여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정착
-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더라도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친생자와 다름없이 양육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시하는 문화

○ 양육비 이행제도의 접근 전략 : 가족 중심 전략

- 양육비 이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며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
-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가정폭력의 방지 등 가족문제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 자녀의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한 예방적·종합적 해결 도모

○ 복지 수급 신청과 연계한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식

- TANF 등 복지수급 신청 시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 신청 체계
- TANF 수급자의 경우 징수된 양육비로 복지급여 비용을 상환하며, 양육부모에게 위 금액 중 일부(1인 자녀 100 달러, 2인 자녀 이상 200 달러) 전달

○ 양육비이행기관을 통한 양육비 수급

- 양육비이행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수급하며, 이행기관이 징수한 양육비를 양육부모에게 전달하는 체계
- 양육비이행기관이 당사자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양육비 이행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등 행정권한 보유

○ 부·모에 대한 강력하고 폭넓은 조사권한

-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양육비이행기관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재, 고용, 의료, 소득, 재산 정보 등 파악 가능

- 양육비이행기관과 다른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 간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수집 가능

○ 강력한 제재 조치
- 수입 직접지급, 여권 거부, 복권 당첨금 가로채기, 운전면허증·차량 등록· 레크레이션 면허 등의 제한 등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 동원
- 뉴욕 주의 경우 양육비 결정이 있으면,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는 고용주에게 직접 수입 원천징수 요청을 할 수 있는 등 법원 결정 없이 양육비 이행 강제 (전체 징수액의 72%)

○ 법제화된 양육비 가이드라인 및 구체적 산정기준 구비
- 법령에 양육비 가이드라인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산식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산출 가능
- 구체적이고 투명한 양육비 산출 공식을 적용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간 양육비 금액에 대한 갈등 소지 완화, 법원의 업무량 경감

○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양육비 이행 업무의 효율적 수행
- 연방-각 주, 주-고용자 등이 연계된 자동화된 정보화시스템(CSENet, e-IWO 등)을 갖추고 있어, 인력·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2)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제도의 특징

○ 양육비 이행제도의 접근 전략
- 양육비 이행 자체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 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
- 경제력 없는 비양육부모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개선 등은 다른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 법원 결정과 연계한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식
- 법원에서 결정서를 양육비이행기관으로 자동 송부하는 체계
- 양육부모가 별도 신청 없이 양육비이행기관에서 양육비 이행 직접 관리 (양육비이행기관에서 양육부모에게 지원받을지 여부 확인)

## 2 제도의 시사점

| 구 분 | 우리나라 제도개선 검토사항 | | 미국・캐나다 사례 |
|---|---|---|---|
| | 현황 | 문제점 | |
| 사회 인식 | 양육비 이행률 17%에 불과 | 사회 인식 부족 | 양육비 이행책임 인식 높음 |
| 접근 전략 | 중장기 방안 마련 중 | 중장기적 전략 마련 필요 | 가족중심 전략(미) |
| 조직 형태 | 공공기관 | 약한 기관 권한 |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
| 인력・예산 | 정규직 47명, 67억 | 업무량 확대 추이 감안, 증원・증액 필요 | 비용대비 효율성 (1달러 투입 5.25 달러 징수)(미) |
| 지원 신청 | 수요자의 신청 (복지 급여와 무관) | 적극적 신청 유인 부족 | 복지급여 신청 시 양육비 병행 신청(미), 법원에서 결정서를 이행기관으로 자동 송부(캐) |
| 지원 대상 |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별거 가정 및 실질적 양육 아동은 미 지원 | 친생부모가 아니더라도 실제 양육한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 |
| 수급 방식 | 당사자 간 직접 지급, 이행원은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의 한계 | 이행기관이 (양육부모의 권리를 위임받아) 직접 징수, 양육부모에게 전달 |
| 조사 권한 | 집행권원 없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불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금융 조사 불가 | 법원을 통해 파악 필요하여, 절차 지연 및 비용 발생 | 채무자 동의 없이 소재, 고용, 의료, 소득, 재산 정보 등 파악 가능 |
| 제재 조치 | 민사채권에 준하는 약한 제재조치 | 이행 실효성 담보수단 미흡 | 강력한 제재 수단 (뉴욕 주의 경우 불이행 시 법원 결정 없이 행정 상 이행강제) |
| 양육비 가이드라인 | 법령 근거 없는 산정기준표를 참고자료로 활용, 구체적 산정식 부재 | 유사 사안에 다른 양육비 금액 책정 가능, 당사자 간 갈등 소지 | 법령에 양육비 가이드라인 규정(미・캐), 구체적인 산식에 따라 자동 산출(미) |
| 자동화 시스템 | 없음 | 업무처리 비효율, 통계 산출 애로 등 | 연방-각 주, 주-고용주 등이 연계된 자동화된 정보화시스템(미) |

### (1) 국가기관이 직접 당사자로서 양육비 이행 업무 수행

○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관이 직접 수행, 강력한 이행 조치 가능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수행

○ 이행기관이 양육비 채권을 위임받아 공법상 지위에서 업무 수행

- 미국은 TANF 수급 신청 시 자녀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Ⅳ-D 신청자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주에게 인계하여야 함
- 양육비이행기관은 TANF 수급자 및 Ⅳ-D 신청자의 권리를 인계 받아 직접 양육비 징수

* 우리나라의 경우 이행원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 당사자 간 권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제3자로서의 지위

○ 양육비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기관이 양육비를 이행 받을 당사자로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세금 체납 시 조치와 다름없는 강력한 제재조치 가능

* 우리나라는 일반 민사채권처럼 법원을 통해서만 제재 업무수행 가능

○ 양육비를 양육비이행기관이 직접 징수 받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불이행 여부 모니터링에 용이

* 우리나라의 경우 이행원에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이행건수가 많아질 경우 모니터링 한계

### (2) 법에 기초한 양육비 가이드라인과 산식에 근거한 산출 방식

○ 미국은 1984년 자녀양육비법(The Child Support Amendment)의 개정에 따라 양육비 가이드라인이 양육비 계산에 적용되기 시작

- 1988년 가족지원법(The Family Support Act) 제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녀 양육비 산정 시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것을 명령

○ 양육비 산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 수행

- 유사 사건에 다른 양육비 금액이 책정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

이 있어 왔음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당사자 간 양육비 금액에 대한 갈등 해소 및 법원의 양육비 금액 산정 부담 최소화 위해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 마련 필요
- 미국 일부 주의 경우 법원 대신 양육비이행기관에서 직접 양육비 결정

* 우리나라는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여 판사가 사안별로 일일이 양육비 금액 산정

### (3) 가족중심의 접근 방식 및 저소득 복지 지원과 연계한 제도 운영

○ 미국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자녀의 관계를 중시한 가족의 틀에서 양육비 문제 해결 도모

- 자녀에 대한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양육부모와 자녀간 유대 강화(자녀 면접·교섭권 등), 가정폭력 방지 등 가족문제 전반을 함께 고려

* 우리나라는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초기로 양육비 이행 체계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가족・아동 정책의 틀에서 상호 협력하에 양육비 문제 해법을 찾는 접근 필요

○ 미국의 경우 정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원한 복지급여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양육비로 상환 받는 형태

- 기초수급 및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제도와 연계,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동 제도가 없으며, 유사한 것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범적 형태로 실시 중

### (4)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 운영

○ 양육비 지원에 관한 연방, 각 주 전체에 미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체 및 재정회계 관리, 다른 기관 정보망과의 연계 등 정

보망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

*** 우리나라는 이제 온라인 신청 시작, 인력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위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필요**

### (5) 국내 유관기관 및 외국의 양육비이행기관과의 협력 강화

○ 연방 및 각 주 기관 간 정보 제공 협력

- 양육비 이행기관은 정보를 제공받는 주체인 동시에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이기도 함
-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양육비 이행 문제와 다른 국가적 과제를 협력 수행

*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에 미국 사례 참고 필요

○ 국제 협력 : 다른나라 양육비이행기관, 협회 등과의 협력

- 미국 OCSE는 26개 국가(캐나다의 주 포함)와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간 활발한 교류, 협력 추진
- 양육비 채무자가 협정을 맺은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육비 이행 상호협력

* 선진국 이행기관 및 국제단체 등과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

### (6) 법원 결정 및 복지수급 신청과 연계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 미국은 복지급여 신청 시 양육비 이행지원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법원 결정 시 결정서를 양육비이행기관으로 자동 송부하도록 하는 신청 체계

- 양육부모가 별도 신청 없이 양육비이행기관에서 직접 관리

### (7) 지원 범위 확대 검토 필요

○ 미국, 캐나다에서 별거가정 및 실질적 양육 아동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지원 범위 확대 검토 필요

## <참고 1> 뉴욕 주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정보

LDSS-4882-KO (7/12)

#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정보
# 및
#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 신청서/소개서

뉴욕주
임시장애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아동복지센터
아동지원집행과

otda
otda.ny.gov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저희 웹사이트인
**childsupport.ny.gov**를 방문하십시오.

## 일반 정보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동양육지원집행부에 요청하시면 번역 및/또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정보*(2 – 7 페이지)를 숙독하신 후 분리 가능한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신청서/추천서* 양식(A-1 – A-8 페이지)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에는 자녀 양육 지원 집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숙지해야 할 중요 사실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목차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 2**

**섹션 1 – 자격, 임무 및 제공 서비스 ..... 2**

**섹션 2 - 친부권 인정으로 인한 권리와 책임 및 법적 절차의 통보에 대한 권리 ..... 5**

*친부권 인정으로 인한 권리 및 책임 ..... 5*
*법적 절차 관련 정보에 대한 권리 ..... 5*

**섹션 3 – 자녀 양육 정책 ..... 5**

*안전 관련 사항 ..... 5*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비밀 보장 ..... 6*
*분배 정책 ..... 6*

**섹션 4 - 법률 서비스와 비용 보상 ..... 7**

*법률 서비스 ..... 7*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 보상 ..... 7*

**섹션 5 – 연간 서비스 비용 ..... 7**

**섹션 6 – 지불 및 연락 정보 ..... 8**

*지불 방법 ..... 8*
*고객 서비스/계정 정보 ..... 8*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신청서 ..... A-1**

**섹션 A – 신청자/수령자 정보 ..... A-1**

*파트 I – 양육권이 있는 부/모(CP) 또는 보호자 정보 ..... A-1*
*파트 II – 양육권이 없는 부/모(NCP)/추정 상의 아버지(PF) 정보 ..... A-3*
*파트 III – 아동 정보 ..... A-4*
*파트 IV – 수양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 (기관용) ..... A-6*

**섹션 B – 증빙 서류 ..... A-7**

**섹션 C –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신청/확인 ..... A-8**

#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이 문서는 자녀 양육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정보(**섹션 1-6**)를 제공하고 안에는 분리 가능한 자녀 양육 서비스의 신청서 및 추천서가 담겨 있습니다. **섹션 1** 은 자녀 양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을 식별하고, 양육권의 할당 및 협력에 대해 설명하며, 자녀 양육 서비스와 기본적인 자녀 양육 의무에 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섹션 2** 는 친부권 인정으로 인한 권리와 책임 및 법적 절차의 통보에 대한 권리를 소개합니다. **섹션 3** 은 주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규정합니다. **섹션 4** 는 법률 서비스와 원가 보상에 대해 논합니다. **섹션 5** 는 연간 서비스 요금에 대해 논하고, **섹션 6** 은 지급 및 연락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모든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신청자와 저소득 가정의 한시적 지원(TANF), Medicaid 및 아동양육지원집행부로 보내진 Title IV-E 수양 아이의 양육 신청자와 수령인에게 제공됩니다. 해당 자녀가 수양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수령자는 사회 복지 사업 지구의 국장이나 피지명자 또는 아동 가족 서비스부의 국장이나 피지명자입니다.

## *섹션 1 – 자격, 임무 및 제공 서비스*

###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격*

21 세 이하의 자녀 한 명 이상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부/모나 부모가 아닌 돌보는 분은 자녀 양육 서비스를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분은 자녀 양육 케이스에서 자녀 양육권이 있는 부/모로 간주됩니다. 해당 자녀에 대한 한시적 지원(공식 명칭 "가족 지원" 또는 "안전망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신청서를 토대로 한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는 귀하 자신과 해당 자녀를 위한 Medicaid 를 신청하고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한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한시적 지원 또는 Medicaid 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는 수양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에게도 제공되며, 이 수양 가정의 위탁 양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자녀가 수양 가정에서의 위탁 양육이 끝난 후 귀하에게 돌아오는 경우, 귀하가 요구하지 않는 한 자녀 양육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또한, 21 세 이하의 자녀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추정상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지원 관련 임무 및 협력*

자녀를 위한 한시적 지원이나 본인과 자녀의 Medicaid 신청자/수령자이거나 귀하의 자녀가 Title IV-E 의 수양 아이 양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귀하를 대신해 지원해 줘야 하는 권리와 귀하가 지원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대상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 지원해 줘야 하는 권리를 사회 복지 사업 서비스에 부여해야 합니다. Medicaid 신청자/수령자의 경우, 이 권리 부여는 의료 지원에 한합니다. 한시적 지원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지원에 한해 귀하의 지원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지원 권리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가정 폭력을 주장하지 않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 아동양육지원집행부에 협조해야 합니다:

- 친부모 또는 추정 상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 귀하가 한시적 지원, Medicaid, 또는 Title IV-E 수양 가정 양육을 신청하거나 받는 혼외로 태어난 각 자녀에 대한 친부권을 입증합니다;
- 양육 지원 순서를 확립, 변경, 또는 조정합니다; 그리고
- 양육비징수부를 통해 양육 지원 순서를 수집하고 집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한시적 지원 또는 본인과 자녀를 위한 Medicaid 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면, 정당한 사유나 가정 폭력 여부의 결정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공되는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다음 서비스는 귀하의 협조로 자녀양육지원집행부에 의해 적절히 제공됩니다:

- 케이스 기록 제도.
- 주소, 고용 및 수입과 자산, 그리고 건강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정보 획득을 포함하여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또는 추정 상의 아버지의 위치 파악.
- 친부권의 자발적인 인정 또는 법원에 단원서를 제출하여 혼외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부권(합법적인 친부)을 인정받도록 지원.
- 가능하다면, 부모 중 한 명으로부터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 등 뉴욕주의 자녀 양육 지원 지침에 따라 양육 지원 순서를 설립 및 변경하도록 법원에 단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지원.
- 양육비징수부 앞으로 지불 가능하도록 양육 지원 순서를 만들도록 지원.
- 양육 지원에 대한 지불금 징수와 분배. 양육비징수부를 통해 지불 가능하게 만들어진 양육 지원 순서에 포함된 경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다음 보조금의 징수 및 분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이혼 수당; 교육비; 육아비; 그리고 현금 의료 지원.
- 다음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행정 구제책을 이용한 양육 지원 의무의 집행: 고용, 수당, 또는 기타 수입으로부터 보류된 수입; 연방 정부 및 뉴욕주의 세금 환급 방해; 재산의 압류; 지원금 부채의 신용 평가 보고하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의 뉴욕주 운전 면허 정지; 그리고 징수를 위한 뉴욕주 세무국에의 추천. 또한, 법원 명령을 받은 건강 보험 지원 혜택이 자녀양육지원집행부에 의해 강요됩니다.
- 행정 구제방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서 양육 지원 명령을 집행하도록 위반 청원 제출 및 고발.
- 공판을 대비한 법률 서비스 비용 복구권 합의서(*Right to Recovery Agreement for Legal Services)*(LDSS-4920)에 서명함에 따른 법률 서비스 (신청자 선택 사항). 법률 서비스 비용은 복구 됩니다.
- 부모가 다른 카운티, 주 또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 가족이 한시적 지원, Medicaid, 또는 수양 가정에서의 양육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계속해서 위에 언급된 자녀 양육 서비스 지속
- 뉴욕주 자녀 양육 지원 웹사이트: **childsupport.ny.gov**
- 뉴욕주 자녀 양육 지원 관련 고객 서비스 헬프라인 전화번호: **888-208-4485**.

***기본적인 자녀 양육 지원 의무 정보***

자녀양육지원집행부는 뉴욕주의 자녀 양육 지원 지침을 토대로 귀하가 자녀 양육 명령을 확립하거나 변경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기본적인 자녀 양육 의무(BCSO)에는, 법원에서 결정이 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백분율에 입각한 의무, 의료 보험 보상 범위 및 현금 의료 지원에 대한 규정, 육아비, 그리고 교육비가 있습니다 (가정 법원법 413 항 참조).

**백분율에 입각한 양육 지원 의무**: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의해 지불되는 기본 금액은 관련된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의 총 수입의 일정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자녀 1 명……..17%
자녀 2 명……..…25%
자녀 3 명……..….…29%
자녀 4 명……..31%
자녀 5 명 이상……최소 35% 이상

예: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사용 가능한 수입에 비례한부담금은 25,000 달러입니다. 지침에 따른 한 명의 자녀에 대한 백분율 금액은연간 4,250 달러에 달합니다. (예: 25,000 달러의 17%).

백분율 지침은 최고 136,000 달러(Medicare, 사회 보장, 뉴욕시 세금 또는 용커스 세금, 환불되지 않는 특정 직원 출장 경비, 지불되거나 지불되지 않은 특정 이혼 수당 또는 별거 수당, 그리고 실제로 지불된 특정 자녀 양육비 제외)까지 부모의 총 수입에 적용됩니다. "수입"은 연방 정부의 소득세 환급에 보고된 수입과 세금 환급에 보고되지 않은 정도까지 산재 보상 수당, 장애 보상금, 비고용 수당, 사회 보장 연금, 퇴역 군인 수당,

연금 및 기타 형태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136,000 달러 이상(이 액수는 2014 년에 증액될 예정이며, 이후 매 2 년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변경에 따라 증액 예정) 이상일 경우 법원이 지침의 백분율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가정법원법 413 절 (1)(f)에 제시된 요인들에 따라 백분율에 입각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의무**: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소득이 법원에 의해서 일인 당 연방 빈곤 기준 금액(federal poverty level)이거나 이하인지 판결이 나오면 추정상의 아동 양육비는 월 $25 가 됩니다. 수입이 자립 준비금 이하(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35%)이나 연방 빈곤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추정상의 아동 양육비는 월 $50 입니다.

**자녀 양육 지원의 추가 요소**: 법원은 양측의 건강보험급여 제공, 건강보험 또는 공공 보장 범위에 대한 의료비 현금 지원금 지급, 보험 비적용 대상인 기타 건강관리 비용 지급의 의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공공 단체를 통해서 또는 고용주 또는 업체를 통해 부/모가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건강보험이나 건강 보험 보장 계획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재학 중이거나, 또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아동 양육비를 커버하는 선에서 BCSO 도 증액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구직 활동 중이어서 아동 양육비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이 비용의 분담금을 내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합당한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하도록 BCSO 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수양 가정에서의 양육과 자녀 양육 지원 의무: 수양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부모 둘 다 자녀의 양육 지원 지침에 기초한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가진 양육권이 없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지침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가 수양 가정에서의 양육비를 초과한 경우, 자녀양육지원집행부는 이 양육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고, 지불하도록 요청 받은 양육비가 실제 수양 가정에서의 양육비에 해당 자녀를 대신해 지불되는 의료 지원비를 추가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령 수정: 필요한 경우, 자녀양육지원집행부는 귀하가 귀하의 양육 지원 명령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상황이 상당히 변화했음을 증명함으로써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도 양육비 지원 명령의 수정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2010 년 10 월 13 일 이후 발효된 경우, 교도소 수감이 자녀 양육 명령에 대한 미지급 또는 해당 명령이나 판결 대상인 양육권이 있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 수감은 상황이 상당히 변화했음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법 451 절 (2)(b)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양육 지원 명령은 다음에 입각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명령이 등록되거나 마지막으로 변경 또는 조정된 후 3 년 경과; 또는 (2) 해당 명령이 등록되거나 마지막으로 변경 또는 조정된 후 15% 이상 당사자의 총수입 변화. 양육 지원 명령의 변경을 추구하는 위 (1)과 (2)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0 년 10 월 13 일 이전에 최초 양육 지원 명령이 내려진 경우; 또는
- 당사자들이 2010 년 10 월 13 일 이전에 최초 양육비 지원 명령에 추가되어 유효하게 실행된 합의나 약정에 들어간 경우; 또는
- 특별히 당사자들이 2010 년 10 월 13 일 이후 유효하게 실행된 합의나 약정에 포함된 (1) 및 (2)에서 제공되는 기초 사항들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매 2 년마다 자녀 양육 집행부는 해당 계정이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COLA)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양육비 지원 명령은 다음의 경우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COLA)을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지원 명령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거나 최근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이 인상 (COLA)된 지 최소 2 년이 경과한 경우; 그리고 (2) 최근 양육비 지원 명령이 이행된 이래 모든 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년평균 변화 합이 10% 이상인 경우.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COLA) 조정은 법원에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한시적 지원 케이스의 경우, 계정이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COLA) 자격이 있거나 당사자 중 한 쪽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때, 양 당사자에게 공지가 발송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한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해당 계정이 자격이 되면 조정을 요구하는 당사자 중 한 쪽 없이도 자동으로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이 인상(COLA)됩니다.

***제공되는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자녀양육지원집행부는 연방 및 뉴욕주 법과 규칙하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자녀 양육 서비스가 적절히 고려되도록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지원과 협력으로 자녀 양육비 지불 만기가 되고 미불된 경우 귀하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 수령인이 한시적 지원 또는 Medicaid를 받지 않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많은 이유로 자녀 양육 케이스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친부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추정 상의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취업되지 않거나 가석방 기회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보호 시설에 수용되거나 양육비를 지불한 능력이 없이 영구적으로 불구가 된 경우;
- 서비스 수령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수령인이 해당 케이스 종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또는
- 자녀양육지원집행부가 전화나 우편으로 서비스 수령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자녀양육지원집행부가 귀하께 효과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자녀양육지원집행부에 연락하여 귀하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및 귀하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자녀의 다른 부/모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섹션 2 - 친부권 인정으로 인한 권리와 책임 및 법적 절차의 통보에 대한 권리***

***친부권 인정으로 인한 권리 및 책임***

친부권은 부모가 친부권의 자발적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법원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결정하여 "친자 관계 확인 명령"을 내릴 때 확립됩니다.

- 뉴욕주법에 따라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법원에 의해 자녀가 21 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 받습니다.
- 해당 자녀는 그 또는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권을 얻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자녀로부터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자가 된 경우, 이 자녀는 사망 보험금이나 장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의 방문 및 양육권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입양과 수양 가정에서의 양육 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 관련 정보에 대한 권리***

귀하는 귀하와 관련된 법원의 소송 절차와 관련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양육 명령을 제정, 변경, 조정 또는 집행하는 명령 또는 탄원서를 기각하는 명령서를 받을 것입니다.

## ***섹션 3 – 자녀 양육 정책***

***안전 관련 사항***

양육비 지원 명령의 제정 또는 집행에 대한 추구가 본인이나 자녀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시면,자녀 양육 집행부에 연락하시어 이를 상의하십시오. 자녀양육지원집행부는 귀하의 주소나 기타 개인 신상 정보가 귀하의 자녀 양육 케이스와 관련한 법정 문서 및 기타 문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자녀양육지원집행부는 다음 증거를 제시하는 분의 요청에 따라 위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가정 폭력 보호 시설에 거주;
- 보호 명령 신청;

-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의 연락이 자녀나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법원의 결정;
- 한시적 지원 또는 Medicaid 직원에 의한 정당한 사유 결정; 또는
- 위치 정보의 공개가 양육권이 있는 부/모나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다는 가정 폭력 연락 담당자의 결정.

귀하의 케이스가 자녀를 위해 한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로 자녀양육지원집행부에 보내졌지만, 친부권이나 양육비 지원 명령이 제정되거나 집행되는 경우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가정 폭력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한시적 지원 관련 직원에 의해 가정 폭력 연락 담당자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이 가정 폭력 연락 담당자는 귀하께 자녀양육지원집행부에 협조해야 하는 요건을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의 Medicaid를 신청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양육지원집행부에 협조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협조로 인해 지원을 요청하는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심각한 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협조로 인해 부/모, 돌보는 분의 친척, 또는 자녀를 돌보는 분의 능력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양수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자녀가 근친 상간 또는 강제 성폭행을 당한 경우; 또는
- 자녀의 입양에 대한 법정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자녀가 태어난 후 최대 3 개월 동안) 자녀를 돌보는 분이 산전 입양 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우.

수양 가정에서의 양육 케이스의 경우, 수양 가정 양육 담당자가 자녀양육지원집행부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가정 내 자녀나 기타 자녀의 건강, 안전 및 행복이 악영향을 받는 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u>개인 정보의 보호 및 비밀 보장</u>***

자녀양육지원집행부는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무결성, 액세스 및 사용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컴퓨터 시스템 내 유지되는 자녀 양육 지원 케이스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귀하가 제공하시는 정보는 <u>법에 의해 허가된 이유에 대해 허가된 분들에게만</u> 공개됩니다.

**사회 보장 번호의 사용**: 연방법(42 USC 666)에 따라 양육권이 있는 부/모, 양육권이 없는 부/모, 추정 상의 아버지 및 자녀의 사회 보장 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 . 자녀양육지원집행부는 다음 목적에 대해서만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합니다: 부모의 위치를 파악하고, 친부권을 확립하며, 양육 지원 명령을 제정, 변경 및 집행하기 위해서; 특정 공공 이익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또는 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보장 번호는 사회 보장국을 통해서만 확인됩니다.

***<u>분배 정책</u>***

양육비 지불은 연방 및 뉴욕주 분배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양육비 지불은 지불금 수령일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한시적 지원을 <u>받고 있는</u> 경우**, 수령된 자녀 양육비는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지불 받아온 총 한시적 지원비까지 환급을 위해 주 및 사회 복지 사업 지구에 지불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한시적 지원 외 매달 징수되는 현재 양육비로부터 자녀 양육비의 "가격 전가율"을 지불받습니다. 가격 전가율은 한시적 지원 케이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21 세 이하 한 명을 포함한 한 가정에 대해 징수되는 현재 양육비 중 매달 최대 100 달러까지 또는 현재 의무 양육비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가격 전가율은 한시적 지원 케이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21 세 이하 두 명 이상을 포함한 한시적 지원 가족에 대해 징수되는 현재 양육비 중 매달 200 달러까지 또는 현재 의무 양육비 중 더 적은 금액까지 증가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불되는 총 한시적 지원금이 상환된 후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징수된 모든 양육비를 지불 받습니다.
-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u>이전에</u> 한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징수된 자녀 양육비는 먼저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만기가 지난 양육비나 양육비 체납금에 대한 지급에 따르는 현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난 후, 수여된 지난 양육비의 상환을 위해 사회 복지 사업 지구로 인해 지불 만기된

양육비나 체납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연방 세금 환급금의 상쇄로 수령된 금액은 먼저 수여된 지난 양육비의 상환을 위해 사회 복지 사업 지구로 인해 지불 만기된 양육비나 양육비 체납금을 지불하도록 지불된 후,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만기가 지난 양육비나 양육비의 체납금을 지원하도록 지불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불되는 총 한시적 지원금이 상환된 후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징수된 모든 양육비를 지불 받습니다.

-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한시적 지원을 <u>받은 적이 없는</u>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적용 가능한 경우, 연간 서비스비를 제외하고 법률 서비스비를 회수하는, 징수되고 지불 만기가 된 모든 양육비를 받습니다.
-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Medicaid 를 <u>받는</u> 경우**, 의료 지원비는 Medicaid 제공자에게 지불되어 온 총 Medicaid 금액까지 상환하기 위해 주 및 사회 복지 사업 지구에 지불됩니다.
- **자녀가 수양 가정에서 <u>양육되고 있는</u> 경우**, 징수되는 양육비는 사회 복지 사업 지구에 지불됩니다. 수양 가정에서의 양육비를 초과하는, 징수된 양육비는 자녀의 배치를 관리하는 사회 복지 사업 지구에 지불되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이 사회 복지 사업 지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양 가정에서의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 ***<u>섹션 4 - 법률 서비스와 비용 보상</u>***

### ***<u>법률 서비스</u>***

자녀가 한시적 지원이나 Medicaid 를 받지 않거나 수양 가정에서 양육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친부권을 확립하기 위해 또는 자녀 양육 명령을 확립, 변경, 또는 집행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서비스는 자녀 양육 케이스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로 되지 않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자녀양육지원집행부가 해당 서비스비를 통지합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선임된 변호사는 사회 복지 사업 서비스 지구 국장의 법정 대리인으로 귀하를 개인적으로 대표하지 <u>않습니다</u>. 이 문제에 있어 변호사의 변호는 친부권의 인정과 부양 의무의 설정, 변경, 조정 및 집행에 국한됩니다. 사회 복지 사업 지구의 변호사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양육권, 방문 및 기타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회 복지 사업 지구의 변호사 또는 직원에게 서명 또는 구두로 제공하는, 담당 직원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복지 관련 사기 정보를 포함한 어떤 정보도 기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 관련 문의는 자녀 양육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시는 경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지원 단체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자비로 귀하가 직접 선택하신 개인 변호사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u>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 보상</u>***

법률 서비스에 대한 회수 동의권 (LDSS-4920)을 작성하시면 자녀양육지원집행부가 관련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자녀양육지원집행부가 징수된 양육비에서 귀하의 현재 의무 양육비 중 25%를 보상해 드리거나 귀하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인 경우,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또는 현재 의무 양육비 중 25%를 보상해 드리고, 이 비용은 상환될 때까지 귀하가 지불하는 의무 양육비에 추가됩니다. 양육비징수부가 수령한 각 납입금은 *분배 정책* 섹션 3 의 분배 체계에 기초한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비용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양육비 체납금이나 지불 만기가 지난 양육비가 지불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u>섹션 5 – 연간 서비스 비용</u>***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뉴욕주나 타주에서 자녀 양육 서비스를 받고 있고 TANF 프로그램(이전의 부양 자녀 가족 지원 제도 [AFDC])을 통해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u>자녀 양육비가 가족에게 지급되는 경우</u>, 연방 회계 연도(10월 1일 ~ 9월 30일) 내 500 달러 이상의 양육비가 징수되면 25달러의 연간 서비스 비용이 부과됩니다. 500 달러의 양육비가 징수될 때, 양육비징수부는 연간 서비스 비용을 지불받기 위해 연방 회계 연도 동안 수령되는 차기 25달러를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한 명 이상의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함께 계정을 가지고 있고 양육권이 없는 두 부모가 500달러 이상을 지불한 경우, 각 계정별로 25달러씩의 연간 서비스 비용이 부과됩니다. 신청자/수령자는 Medicaid나 안전망 지원과 관련해

수령된 자녀 양육 서비스 또는 자녀 양육비가 해당 자녀의 가족에게 지불되지 않는 수양 가정에 배치된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25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섹션 6 – 지불 및 연락 정보***

***지불 방법***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주로 소득의 원천 징수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해 지불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특정 상황에서는 뉴욕주 자녀 양육 지원 처리 센터에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예: 양육 지원 명령이 신설되어 원천 징수되는 수입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영업자이거나 고용주가 없습니다). 자기앞 수표, 지불 보증 수표 및 우편환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자금 이체 및 신용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리 센터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불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뉴욕주의 자녀 양육 지원 웹사이트 childsupport.ny.gov 를 방문하시거나 888-208-4485 (TTY: 866-875-9975)로 뉴욕주의 자녀 양육 지원 고객 서비스 헬프라인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불은 뉴욕주의 케이스 식별자를 포함해야만 하며, 다음에 지불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고, 다음 주소로 보내져야 합니다: New York State Child Support Processing Center, PO Box 15363, Albany NY 12212-5363.**

***고객 서비스/계정 정보***

**888-208-4485**(TTY: 866-875-9975 – **Relay Service http://www.fcc.gov/encyclopedia/trs-providers 연계 서비스**)로 뉴욕주 자녀 양육 지원 고객 서비스 헬프라인에 전화하시거나 childsupport.ny.gov 에 온라인으로 방문하시어 일반적인 자녀 양육 지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귀하의 계정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및 뉴욕주 자녀 양육 지원 고객 서비스 헬프라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개인 식별 번호 (PIN)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자녀 양육 지원 고객 서비스 헬프라인에 전화하시어 PI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록 보관을 위해 1 페이지부터 8 페이지까지 보관하세요 자녀 양육 지원 시버스 신청서/추천서 페이지 A-1 - 페이지 A-8 까지 떼어내 작성한 후 자녀양육지원집행부로 보내주십시오.***

## <참고2> 뉴욕 시 가정법원 안내 자료

### Custody, Visitation & Jurisdiction (양육비, 면접교섭 & 관할)

아래 가이드는 부모가 동일한 county or state 에 살지 않는 경우, 양육비 및 면접교섭 신청을 했을 때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Jurisdiction? = 관할

해당 관할 법원은 특정 사건의 결정을 할 권한을 갖습니다.

- **양육비 및 면접교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뉴욕주에서는 Family Court 혹은 Supreme Court에 가면됩니다. 부모가 이혼 사건을 진행 중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원에 가면됩니다. 이혼 사건은 Superme Court 에서 진행됩니다.

- **이혼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 Family Court 에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 관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규칙은 자녀가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이미 법원이 양육비 혹은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내 아이가 사는 곳이 왜 중요한가요?**

양육비 혹은 면접교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home state에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The home state란, 자녀가 최소한 6개월 동안 거주한 state를 의미합니다.

만약, 자녀가 최근에 새로운 주로 거주를 옮긴 경우에는, 자녀가 그 곳에서 최소한 6개월 동안 거주할 때까지는 새로운 주에 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까지는 자녀가 그 직전에 6개월 동안 거주한 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UCCJEA는 무엇인가요?**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UCCJEA)는 home

state가 무엇인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UCCJEA는 interstate case의 경우에 어느 state가 결정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쉽게 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Interstate 란, 하나 이상의 state 가 사건과 관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Home state rule은 제가 어느 county에 제기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 당신은 자녀가 6개월 동안 지낸 county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borough 입니다.

- **Home state rule에는 예외가 있나요?**

예. 다른 주의 법원도 자녀가 해당 주에 6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temporary emergency jurisdiction(임시 긴급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자녀, 자녀의 형제자매, 자녀의 부모가 학대의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임시 긴급 관할을 갖게 됩니다.

- **만약 자녀가 6개월 보다 어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자녀가 생후 6개월 전인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난 주가 home state가 됩니다. (자녀가 짧은 기간 동안에만 해당 주에 살았다는 것은 이 경우 home state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만약 양육권, 면접교섭권 결정에 관하여 변경을 하고 싶으면, 결정을 내린 법원에 다시 가면 되나요?**

예. 법원이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결정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정변경(a change of circumstatnces)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당신은 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서면 신청입니다. 변경 결정은 법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기존의 양육권, 면접교섭권 결정을 내린 법원이 이를 변경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할 법원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자녀가 다른 주에서 6개월 이상 살았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제가 다른 state, county의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판사에게 당신의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사에게 어떻게 이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당신의 사건을 다른 지역의 법원으로 이송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판사에게 이송(change the venue)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송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Venue는 관할을 의미합니다. 이송 신청은 서면으로 당신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해당 사건을 이송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판사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자녀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자녀가 그 곳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양 당사자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양 당사자의 금융 상황이 어떤지

-자녀의 진술 및 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한 사건 관련 기록들

-기타 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 **양육권, 면접교섭권 사건이 다른 두 개의 주에서 진행될 수 있나요?**

예. 때로는 한 쪽 부모가 하나의 주에서 사건을 신청하고, 다른 부모가 다른 주에서 동일한 사건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법원의 판사들은 각자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home state로 판단되는 주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결정합니다.

- **다른 state or county에 사고 있는 사람에게 법원 신청서(소장?)를 어떻게 송달하나요?**

만약 당신이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 지 알고 있다면, 당신은 지역 경찰 사무실에 도움을 줄 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송달을

위하여 사실 기관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에게 어떻게 송달할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LIFT 가이드의 "Serving Court Papers." 를 참고하세요.

- **Telephonic hearing은 무엇인가요?**

Telephonic hearing은 당사자의 일방 혹은 쌍방이 허가를 받아서 진술 혹은 증언을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떻게 telephonic hearing을 신청할 수 있나요?**

Telephonic hearing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당 판사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하여는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Electronic Testimony Application and Waiver of Physical Presence" 입니다. 신청서에 당신은 왜 telephonic hearing을 신청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 중 하나의 이유는 당신이 다른 주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신청은 판사에 의하여 승인되어 진행됩니다.

- **신청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신청서는 뉴욕 주 법원 websit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이혼 당시에 작성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내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Supreme Court에 가야 하나요? 혹은 Family Court에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당신의 이혼 판결문은 Family Court of Supreme Court 중 어느 법원이 관할 법원인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판결문에 어느 법원이 관할 법원인지 적혀 있다면, 당신은 해당 법원에 양육권, 면접교섭권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혼 판결문에 Supreme Court와 Family Court 두 법원이 동시에 관할을 갖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할이 공존하는 경우란, 해당 신청을 두 법원 중 어느 하나에 제기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느 법원에 제출을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 **저는 다른 주에 사는 친척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제가 친척을 위하여 양육권 및 후견인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당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후견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친척에게 자녀를 맡길 때에 Family Court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친척이 위와 같은 결정들 없이 당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병원에 보낼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척이 그러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친척들은 Family Court에 양육권 및 후견권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Home state rule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가 새로운 주에서 산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신의 친척은 뉴욕주에 위 신청들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LIFT guide를 참고하세요.

- **만약 제가 양육권, 면접교섭권 결정을 뉴욕주에서 받고 나서 저 혹은 상대방이 새로운 주로 이사간 경우에는 새로운 주에서도 뉴욕 주의 결정을 집행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당신의 결정이 UCCJEA의 규칙과 다른 관련 연방법들을 준수하는 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몇몇 주들은 그들이 집행하기 전에 위 결정을 입력하라고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결정 입력이란, 결정문을 그들의 기록에 입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 입력을 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주의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Family Court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설명해줍니다.